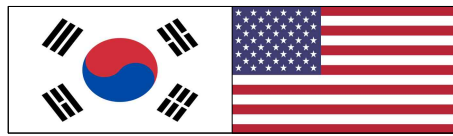


국회입법조사처장 미국 출장보고서



2024. 1. 22.(월) ~ 1. 28.(일)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목 차

I. 방문개요

| | |
|---------------------|---|
| 1. 방문목적 | 3 |
| 2. 방문기간 / 방문국 | 3 |
| 3. 방 문 단 | 3 |
| 4. 주요일정 | 4 |

II. 주요활동

| | |
|--------------------------|----|
| 1. 브루킹스 연구소 방문 | 9 |
| 2. 헤리티지 재단 방문 | 13 |
| 3. 주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방문 | 16 |
| 4. 루거센터 선임연구원 면담 | 20 |
| 5. 의회조사국 방문 | 26 |
| 6. 하원 법제실 방문 | 34 |
| 7. 뉴욕한인회 방문 | 38 |
| 8. UNDP 방문 | 42 |
| 9. 기타 방문 및 면담 | 47 |

III. 참고자료

| | |
|-------------------------------|----|
| 1. 미국 개관 | 61 |
| 2. 한·미 관계 | 66 |
| 3. 미국 의회 및 한·미 의회 교류 현황 | 70 |

● 국회입법조사처장 미국 방문 ●

I . 방문개요



1. 방문 목적



- 국회 주요 현안에 대한 미국의 대응 조사 및 기관 간 협력 방안 모색
 - 입법영향분석을 통한 ‘더 좋은 법률 만들기’를 위한 미국 의회조사국 및 유관 기관 업무 현황 조사 및 면담
 - 미국 상원의 인사청문회 제도 운영 현황 조사 및 한국의 시사점 도출
 - 재외동포 투표권 및 복수국적의 쟁점 분석과 대안 모색
 - 국회입법조사처의 연구 및 조사분석 역량 강화를 위한 유관 기관 협력방안 모색

2. 방문기간 / 방문국



- 2024년 1월 22일(월) ~ 1월 28일(일), 5박 7일
- 미국 워싱턴(3박), 뉴욕(2박)

3. 방문단



-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 정준화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 박단비 기획협력담당관실 대외협력 주무관

4. 주요일정



| 국가(도시) | 일자 | 시간 | 주요일정 |
|-------------|--------------|-------|--|
| 미국 (워싱턴) | 1.22. (월) | 10:15 | 인천(ICN) 출발(KE093) -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A/B카운터 |
| | | 09:50 | 워싱턴 덜레스(IAD) 공항 도착 |
| | | 11:30 | 워싱턴 D.C. 한국혁신센터 방문 - 참석자: 류시훈 센터장 |
| | | 14:00 | 브루킹스 연구소 방문 - 참석자: 앤드루 여(Andrew Yeo) 선임연구원 |
| | | 15:30 | 헤리티지 재단 방문 - 참석자: 브루스 클링너(Bruce Klingner) 선임연구원 |
| | 1.23. (화) | 10:00 | 주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방문 - 참석자: 조현동 주미국 대한민국대사 조기중 총영사, 이지호 영사 |
| | | 12:00 | 조지워싱턴대학 한국학연구소 부소장 오찬 - 참석자: 김연호 부소장 |
| | | 13:30 | (가칭)의회외교센터 예정 공간 방문 - 참석자: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장, 김기영 차장 - 장 소: 한국무역협회(KITA) 워싱턴지부 빌딩 |
| | | 15:00 | 루거센터 선임연구원 면담 - 참석자: 폴 공(Paul Kong) 선임연구원 - 주 제: 미국 상원 인사청문회 현황 및 시사점 |
| | | 18:00 | 워싱턴 한인회장 면담 - 참석자: 이승배 워싱턴지구한인연합회 회장 |
| | 1.24. (수) | 10:00 | 미국 의회조사국 방문 - 참석자: T. J. 홀스테드(T. J. Halstead) 의회조사국 부국장 마크 매닌(Mark Manyin) 아시아 전문조사관 |
| | | 14:00 | 미국 하원 법제실 방문 - 참석자: 웨이드 벌루(E. Wade Ballou Jr.) 하원 법제실장 워렌 버크(Warren Burke, Esq.) 선임변호사 앨리슨 길리(Allison Gilley) 법제보좌관 |

| 국가(도시) | 일자 | 시간 | 주요 일정 |
|------------|--------------|-------|---|
| | | 18:00 |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 - 참석자: KBS, MBN, YTN, 연합뉴스, 세계일보, 뉴스1 한국경제신문, 아시아투데이 워싱턴특파원 |
| 미국 (뉴욕) | 1.25. (목) | 11:30 | 워싱턴 유니언 스테이션 출발(AMTRAK 84 Northeast Regional) |
| | | 14:33 | 뉴욕 펜 스테이션(모이니한 홀) 도착 |
| | | 15:00 | 뉴욕한인회 방문 - 참석자: 김광석 뉴욕한인회 회장, 김성진 전략기획수석부회장, 부용운 행정상임수석부회장, 이승우 정무법률수석부회장, 김자경 홍보수석부회장, 뉴욕한인회 이사 외 |
| | | 17:00 | 뉴욕한국문화원(신축) 방문 - 참석자: 김천수 뉴욕한국문화원 원장 - 장 소: 22-126 East 32nd St, New York |
| | 1.26. (금) | 09:00 | UNDP 방문 - 참석자: 마르코스 아시아스 네토(Marcos Athias Neto) UN사무차장보/UNDP정책·프로그램국장 |
| | | 11:00 | 뉴욕 한인 라디오 방송(AM 1600 K-Radio) 출연 - 진행자: 김경주 AM 1600 K-Radio 보도국장 - 장 소: AM 1600 K-Radio 스튜디오(뉴욕주 베이사이드) |
| | | 14:30 | 엘렌 박 뉴저지 주하원 의원 면담 - 참석자: 엘렌 박 뉴저지 주하원 의원(법사위원장) 장선직 보좌관 - 장 소: 엘렌 박 의원 사무실(뉴저지주 앵글우드) |
| | 1.27. (토) | 12:00 | 뉴욕 JFK 공항 출발 (KE082) - 출국장(3층) / 2번 카운터 |
| | 1.28. (일) | 17:45 | 인천(ICN) 공항 도착 |

● 국회입법조사처장 미국 방문 ●

Ⅱ. 주요활동



1. 브루킹스 연구소 방문



1) 방문일시: 2024년 1월 22일 월요일 14:00-15:00

2) 참석자

| 국회입법조사처 | 브루킹스 연구소 |
|--|---------------------------|
| -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 정준화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 박단비 기획협력담당관실 대외협력 주무관 - 김경신 주미국대사관 입법관 - 유지현 주미국대사관 입법연구원 | - 앤드루 여(Andrew Yeo) 선임연구원 |

3) 브루킹스 연구소

- 1916년 미국의 사업가이자 자선가였던 로버트 브루킹스(Robert S. Brookings)가 정부연구소(Institute for Government Research, IGR)를 설립
 - 1927년 IGR과 경제연구소(Institute of Economics, 1922년 설립), 브루킹스 대학원(Robert Brookings Graduate School of Economics and Government, 1923년 설립)을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로 통합
- 브루킹스 연구소는 미국의 대내외 정책과 경제·정치·사회 전반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이며, 진보적인 성향으로 알려짐
 - 300명 이상의 전세계 학계 및 정부 관련 전문가가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세계 여러 도시에 해외 센터를 운영함
- 브루킹스의 연구 프로그램은 크게 5개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 센터를 운영
 - 5개 연구 프로그램은 ①정부(Governance Studies), ②경제(Economic Studies), ③외교(Foreign Policy), ④경제발전(Global Economy and Development), ⑤지역사회발전(Brookings Metro)으로 구성됨

4) 주요 면담 내용

□ 브루킹스 연구소에 대한 소개

- 브루킹스 연구소는 미국의 제1기 정책·입법 싱크탱크로, 설립 초기부터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정부로부터의 신뢰가 강함
- 워싱턴에는 많은 정책 및 입법 싱크탱크가 있는데, 오랜기간 동안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정 정당과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는 정치적 중립성 및 초당파주의 유지가 중요함
- 브루킹스 연구소는 특정 아젠다에 대해서 기관이 관점을 정하지 않고 내부 연구자가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 및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활동에서 학술적 요소를 강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다른 싱크탱크와 차별성이 있음

□ 브루킹스 연구소의 한국 및 북한 연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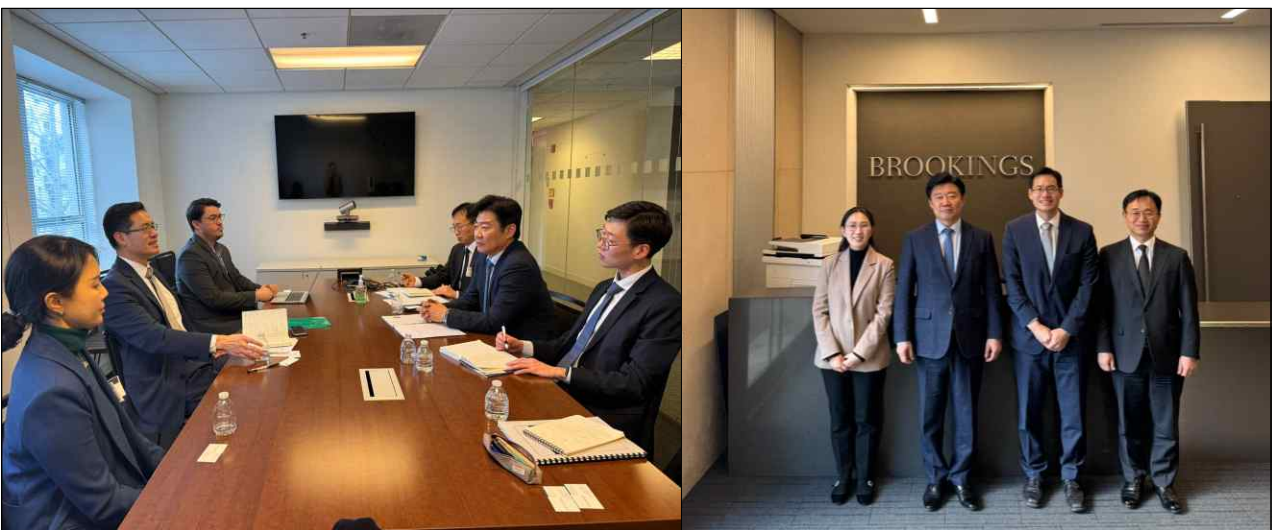
- 브루킹스 연구소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으로 한국학연구(Korea Studies)를 해 오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한국의 동아시아연구원·국립외교원 등과 함께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음
- 브루킹스 연구소는 한국의 정부 인사들과 미국의 정부 인사들이 한국 및 북한 문제에 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접점으로 기능하고 있음
 - 한국에 미국을 알리고, 동시에 미국에 한국을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브루킹스 연구소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유용하게 작용하고 있음

□ 북한의 현황에 대한 분석 및 전망

- 현재 한국 정부는 안보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 또는 정책 변화가 없지만, 향후 총선 과정 및 그 결과에 따라서 정책변화가 있을 수 있음
- 최근 북한 내부에서 한국의 문화·콘텐츠에 대한 통제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한국과 서방의 문화·경제가 북한 내부로 침투하여 북한 체제를 위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실제 북한은 국경통제, 시장경제 거부, 외부미디어 통제를 더욱 강화하여 체제를 공고히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특히 코로나19 이후 내부통제는 더욱 강화된 것으로 분석됨

□ 국회입법조사처와 브루킹스 연구소의 연구협력

- 한·미 및 북한·동북아시아와 관련한 현안에 대해서 미국이 보는 시각과 한국이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인식하고, 나아가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는 양 기관간 연구협력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임
 - 한국 내에서의 한·미 현안에 대한 논의는 정치적 지향에 따라 차이가 크고, 다양한 관점이 융합되어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는 상황임. 따라서 한국 내부에 있는 다양한 관점과 미국에서 보는 의견이 공유되고 논의될 수 있는 연구협력이 필요함
 - 오늘날 북한은 내·외적으로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고, 역학관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도출될 것인지는 쉽게 파악하기 어려움. 또한 북한이 더욱 폐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서 외부의 영향이 잘 침투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협력이 필요함
- 브루킹스 연구소의 현실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MOU와 같은 공식적인 방식으로 국회입법조사처와 연구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고, 연구자 간의 자유로운 연구협력 기회를 만드는 것이 적절할 것임
 - 국회입법조사처는 ‘북한·남북관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센터가 브루킹스 연구소의 연구자와 함께 느슨한 형태의 연구협력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임



5) 주요 면담인사 인적사항

| | | |
|------|---|---|
| 성명 | 앤드루 여 (Andrew Yeo) |  |
| 직위 | 브루킹스 선임연구원(Senior Fellow) | |
| 학력 | 2000 Northwestern대학교 학사 2005 ~ 2008 코넬대학교 석사·박사 | |
| 주요경력 | 2008 ~ 2020 미국 가톨릭 대학교 조교수 및 부교수 2018 서울대학교 여름학기 국제학 초빙교수 2020 필리핀대학교 폴브라이트 초빙 연구 교수 2020 ~ 2021 모린&마이크 맨스필드 재단 선임연구원 2022 ~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 | |

2. 헤리티지 재단 방문



1) 방문일시: 2024년 1월 22일 월요일 15:30-16:30

2) 참석자

| 국회입법조사처 | 헤리티지 재단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정준화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박단비 기획협력담당관실 대외협력 주무관- 김경신 주미국대사관 입법관- 유지현 주미국대사관 입법연구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브루스 클링너(Bruce Klingner) 선임연구원 |

3) 헤리티지 재단

-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은 미국 의회 보좌관이었던 에드윈 풀너와 폴 웨이리치에 의해 1973년에 설립되었음
 - 현재까지 50년 동안 세금과 규제에서부터 범죄와 국방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책 분야의 연구에 참여해 왔음
- 헤리티지 재단의 설립 목적은 자유로운 기업과 제한적인 정부, 개인의 자유, 전통적인 미국의 가치, 국방 강화 같은 원칙에 기반을 둔 보수적 성향의 정책을 형성하고 촉진하는 데 있음
- 헤리티지 재단은 주요 정치 쟁점에 대한 연구 결과를 의회, 정책 입안자, 언론매체, 학계에 제공하고 있음
- 다른 연구기관에 비해 특정 기업이나 산업이 아니라 개인 보수층(약 500,000명 이상)의 지원을 통해 기관이 운영되므로 상대적으로 보수주의적 성향을 지닌 정책연구기관이자 싱크탱크로 평가됨

4) 주요 면담 내용

□ 헤리티지 재단에 대한 소개

- 헤리티지 재단은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않고 개인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음. 미국 정부 또는 외국 정부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지원을 받게 되면 해당 정부에 유리한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부에 유리한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임
- 헤리티지 재단은 정책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개입을 중요한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음. 정책 반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고서를 짧게 작성함. 중요 이슈에 대해 1,200 단어 내외, 길어도 5,000 단어를 넘지 않게 하여 바쁜 정책결정자들이 빠르고 쉽게 읽을 수 있게 함. 긴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정책교육을 지향하는 워싱턴의 다른 싱크탱크와 차별성이 있음

□ 한·미 관계에 대한 분석 및 전망

- 지난 트럼프 정부는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 등으로 한·미 관계에 영향을 미쳤지만, 바이든 정부에서 일정 부분 관계 회복을 추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한국을 둘러싼 동북아시아 상황이 복잡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내에서도 민주당과 공화당의 관점이 상이함. 다만, 북한·중국·러시아를 제외한 한·미 관계 또는 한·미·일 관계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북한의 현황에 대한 분석 및 전망


- 미국 내에서 북한을 보는 관점은 다소 상이함. 일반 국민은 한국과 북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의회와 정부는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원함
- 지난 트럼프 정부에서 주한미군 철수 및 방위비 삭감 등을 논의했는데, 미국 내 많은 한국 연구자들은 트럼프 정부의 한미동맹 약화 조치가 결국에는 북한 제재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여 반대의견을 낸 바 있음
- 이번 대선에서 바이든이 재선되면 지금과 유사할 것이지만, 트럼프가 당선되면 대북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음.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주한미군 감축, 비핵화 포기과 같이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가 재등장할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음

□ 국회입법조사처와 헤리티지 재단의 연구협력

- 국회입법조사처는 북한에 관한 국내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하는 ‘북한·남북관계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국회입법조사처와 헤리티지 재단이 북한 문제, 한·미 관계,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상황을 연구하기 위해 MOU와 같은 공식적인 연구협력 체계를 갖는 것은 현실적인 여건상 쉽지 않고, 연구자 간의 컨퍼런스 참여 등은 가능할 것임
- 국회입법조사처와 헤리티지 재단의 한국·아시아 담당자 간의 온라인 웹세미나, 오프라인 컨퍼런스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5) 주요 면담인사 인적사항

| | | |
|------|--|---|
| 성명 | 브루스 클링너 (Bruce Klingner) |  |
| 직위 |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 | |
| 학력 | Middlebury 대학 학사 Defence Intelligence College 대학 석사 National War College 대학 석사 | |
| 주요경력 | 미중앙정보국(CIA) 한국과장 미중앙정보국(CIA) 한국 부과장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 |

3. 주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방문



1) 방문일시: 2024년 1월 23일 화요일 10:00-11:30

2) 참석자

| 국회입법조사처 | 주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
|--|---|
| -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 정준화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 박단비 기획협력담당관실 대외협력 주무관 - 김경신 주미국대사관 입법관 - 유지현 주미국대사관 입법연구원 | - 조현동 주미국 대한민국대사 - 조기중 주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총영사 - 이지호 주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 |

3) 주요 면담 내용

□ 재외국민투표(재외선거) 운영 현황 및 과제

- 현재 제22대 국회의원 재외국민투표 등록 기간이며, 등록은 영사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음. 투표는 공관투표소 또는 추가투표소에 직접 방문해야 함
 - 추가투표소는 재외동포 밀집 지역에 있는 한인회관 등에 설치하며, 현행 법령상 재외공관 관할구역별 재외국민 3만 명 당 1개씩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음
 - 공관투표소·추가투표소 방문 방식은 투표소 방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유권자의 비용 부담이 크고,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재해가 발생할 경우 투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음
- 현행 방식에서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추가투표소 확대 및 재외선거관의 효과적 활용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재외선거 영사(재외선거관)를 파견하여 관리하는 공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공관에 비해서 투표율이 높게 나타남
- 우편투표는 여러 장점이 있지만,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실무담당자 입장에서는 투표의 공정성, 신뢰성, 비용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음

- 우편투표의 수발신 과정에서 조작이 발생할 경우 선거 전체의 공정성·신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비용 측면에서도 유권자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우편을 발송하는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OECD 국가 중 70%의 국가가 재외선거에 우편투표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우편투표에 대해서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함


□ 복수국적의 문제 및 과제

- 우리 국적제도는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을 금지하고 있으나 2010년 「국적법」 개정 이후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음
 - 출생으로 인해 복수국적을 획득한 사람(여성의 경우 만 22세까지, 남성의 경우 만 18세 혹은 병역 이행 후 2년 이내까지)
 - 귀화한 자로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미성년일 때 해외로 입양되었다가 국적을 회복한 사람 등
 -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적회복 재외동포(국적법 제10조제2항제2호),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한 만 65세 이상의 국적회복 재외동포(국적법 제10조제2항제4호)
- 「국적법」 제12조에 따라 외국에서 출생한 아이의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아이는 한국 정부에 출생 신고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게 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면제처분을 받지 않는 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됨
 -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으로 보유하기 때문에 미국의 공직에 진출하는 것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함
- 또한 만 65세 이상의 재외동포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연령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서 동포사회 의견이 다양함
- 한편, 외국의 우수한 인력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서도 복수국적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연구개발·첨단기술·문화예술 분야 등의 우수한 인력을 국내에 유치하고, 특히 공직자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적이 필요하지만, 당사자는 미국 국적을 유지하고 싶어 함. 따라서 복수국적 범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출산율이 낮고, 지방소멸의 우려가 큰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했을 때 복수국적 범위 확대가 경제활동 인구 유지의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임



5) 주요 면담인사 인적사항

| | | |
|------|--|---|
| 성 명 | 조 현 동 (趙 賢 東) |  |
| 직 위 | 주미국 대한민국대사 | |
| 부임일자 | 2023년 4월 14일 | |
| 학 력 | 1985. 2. 한국외대 서반아어 학사 1989. 5. 스페인 국립외교관학교 수료 | |
| 주요경력 | 1985. 5. 제19회 외무고시 합격 1993. 12.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1등서기관 1998. 6. 외교통상부 총무과 인사운영계장 1999. 12. 주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1등서기관 2003. 7. 외교통상부 북미국 3과장 2005. 1. 주인도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참사관 2008. 3. 대통령실 외교안부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명박 정부) 2010. 2. 외교통상부 북핵외교기획단장 2012. 8. 외교통상부장관 보좌관 2012. 11.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 2016. 3. 외교부 공공외교대사 2017. 2. 외교부 기획조정실장 2019. 10. 유엔산업개발기구 한국투자진흥사무소 대표 2022. 5. 제7대 외교부 제1차관 (윤석열 정부) 2023. 4. 제28대 주미합중국 특명전권대사 | |

4. 루거센터 선임연구원 면담



1) 면담일시: 2024년 1월 23일 화요일 15:00-16:30

2) 참석자

| 국회입법조사처 | 면담자 |
|--|-----------------------------|
| -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 정준화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 박단비 기획협력담당관실 대외협력 주무관 - 김경신 주미국대사관 입법관 - 유지현 주미국대사관 입법연구원 | - 폴 공(Paul Kong) 루거센터 선임연구원 |

3) 폴 공 루거센터 선임연구원

- 루거센터(Lugar Center)는 리처드 G. 루거(Richard G. Lugar) 전 미국 상원의원이 2013년 설립한 민간 싱크탱크임
 - ※ 코로나 이후에는 완전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다.
 - 루거센터는 ‘차이를 만들기 위한 헌신(DEDICATED TO MAKING A DIFFERENCE)’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음
 -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 세계적인 식량 안보, 외국 원조의 효과성 및 글로벌 발전, 에너지 안보, 양당제 강화 등의 세계적인 문제에 대한 통찰력 있는 토론 플랫폼을 지향하며, 관련 연구를 후원하고 있음
- 폴 공(Paul Kong) 루거센터 선임연구원(Senior Fellow)은 미국 상원 보좌관 역할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인사청문회 진행 경험을 보유함
 - 리처드 루거(Richard Lugar) 前 상원의원(외교위원장 역임) 정무보좌관
 - 척 헤이글(Chuck Hagel) 前 상원의원(오바마 정권 국방장관 역임) 정책실장

4) 주요 면담 내용

□ 상원 인준청문회 대상 공직에 대한 질의

- Q1) 상원의 인준을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 공직(Positions Subject to Presidential Appointment with Senate Confirmation, PAS Positions) 중에서 소관 상임위원회가 인준청문회를 생략하는 공직이 있는가?
 - 상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준청문회를 생략하는 경우는 없다.
- Q2) 소관 상임위원회가 인준청문회를 열지 않고 서면으로 인준 동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 이유와 배경은 무엇인가?
 - 상원 소관 상임위원회는 많은 지명자를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직위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열지 않고 서면으로 질의·응답하는 경우가 있다.

□ 백악관의 공직 후보자 검증(Vetting)에 대한 질의

- Q3) 대통령은 공직 후보자를 선정(selection)하는 과정에서 상원 지도부 또는 소관 상임위원장 등 상원 의원과 협의하는가?
 - 상황에 따라 다르다. 백악관이 상원 지도부·의원과 사전에 협의를 거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 참고로, 2013년 이전까지 지명자의 상원 인준을 위해서 60표가 필요했기 때문에 백악관이 사전에 상원 지도부·의원과 협의를 거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2013년부터 의결 정족수를 50표(판사는 2017년부터 50표)로 낮추었기 때문에 상원 지도부·의원과의 사전 협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 Q4) 백악관의 공직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법무보좌관실(Office of Counsel), 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 정부윤리실(Office of Government Ethics, OGE)이 각각 어떠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하는가?
 - FBI는 장관급 등 고위직을 조사하고, 나머지 후보자는 각 부처에 있는 검증기관에서 조사한다. IRS, OGE 등도 담당 역할을 한다.
 - 법무보좌관실, FBI, IRS, OGE의 검증(vetting) 결과를 받은 백악관 인사비서관실에서 후보자를 종합적으로 검증하게 되는데, 이것을 “murder boards”라고 한다. 백악관

인사비서관실의 내부 검증이 엄격하고, 이 과정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많다.

- Q5) 백악관의 공직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후보자의 신상, 검증 내용이 외부로 유출된 사례가 있었나? 무엇이 그러한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가?
 - 후보자의 신상, 즉 누가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지가 유출되는 경우는 빈번하다. 백악관 기자단이 찾아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커트 캠벨 전 NSC 조정관은 2023년 11월 1일 국무부 차관에 공식적으로 지명되기 몇 달 전부터 언론에서 후보감으로 회자된 바 있다.
 - 다만, 검증 내용까지 유출된 사례는 드물다.
- Q6) 백악관은 검증을 통과한 공직 후보자를 상원으로 회부한다. 이 때 소관 상임위원회는 백악관이 수행한 후보자의 도덕성, 윤리 검증 결과를 신뢰하는 편인가?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신뢰하는 편이다. 그러나 상원이 백악관의 검증에 대해서 완전하게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백악관이 후보자에 대해 완벽하게 조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예를 들어, 1993년 클린턴 행정부 초대 법무부장관 후보자인 조 베어드가 백악관 검증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후보자가 불법이민자를 가정부로 고용한 것이 밝혀져서 지명철회한 사례가 있다.
 - 따라서 상원에서도 후보자에 대해 별도의 검증자료를 요청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검증한다.
- Q7) 소관 상임위원회는 백악관이 수행한 후보자 검증 자료를 볼 수 있는가? 백악관은 그 자료를 규정에 따라 당연히 제출하는가, 아니면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이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는가?
 - FBI 자료는 상원이 요청하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상원에 제출한다. FBI가 상원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상원이 해당 후보를 더욱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상원에 제출한다.
 - 만약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FBI가 상원에 자동으로 보낸다면 그것은 유출(leak)이다.

□ 상임위원회 인준청문회 운영에 관한 질의

- Q8) 소관 상임위원회 인준청문회는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과 직무역량 검증 중에서

어디에 초점을 두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정책·직무역량과 리더십 검증을 강조하는 편이다.
- 대부분의 후보자들은 많은 직원과 예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하므로 리더십과 관리역량이 있는지 살펴본다. 전문성이 중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전문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도 한다.
- Q9) 소관 상임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의원이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질문을 하는 것은 흔하게 있는 일인가, 아니면 가끔 발생하는가?
 - 청문회에서 후보자 도덕성 검증을 하는 경우는 가끔 발생한다.
 - 통상적으로 백악관은 청문회 전에 후보가 상원 의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도덕성, 역량 등에 대해서 소명하는 의원 예방(courtesy calls) 기회를 마련하는데, 이 때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대한 쟁점이 많이 해소된다. 만약 도덕성에 흠결이 많아서 상원의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면 후보자가 자진사퇴하거나 지명철회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 Q10)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후보자의 도덕성과 윤리를 조사하고 검증하는 절차와 방법은 무엇인가? 그 과정과 내용은 공개하는가?
 - 위원회별로 후보자에게 검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한다. 그 외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여 도덕성과 윤리를 조사한다.
 - 검증은 청문회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며, 서면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 청문회는 공개가 원칙이다. 다만, 안보 등 일부 사안은 비공개로 이루어진다.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인 경우는 위원장이 공개 여부를 판단한다. 도덕성과 같은 사생활 이슈라고 하더라도 알려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공개한다.


□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의결에 관한 질의

- Q11)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공직 후보자에 대해서 도덕성·준법성·전문성 미흡 등을 이유로 인준청문회를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는가?
 - 상임위원회 청문회를 지연하거나, 상원 본회의 표결 날짜를 잡지 않는 경우도 있다.
 - 다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후보자에 대해서 대부분의 경우는 대통령이 지명철회를 하거나 후보자가 자진사퇴한다.

- Q12) 한국의 국회 상임위원회가 각 부처 장관에 대한 인준청문회에서 부적격 경과보고서를 제출하더라도 대통령은 그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상원에서 부적격 의견을 제시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한 사례가 있었는가? 그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현재는 불가능하다.
 - 다만, 과거에는 그런 경우가 아주 예외적으로 있었다. 상원이 후회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recess appointment)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는 상원이 공식적으로 후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는 어렵다. (* 회기가 끝나면 즉시 몇 분간 임시회를 열어 형식상 회의를 계속함)
- Q13) 대통령제 국가에서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준청문회는 야당이 정치적으로 사용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한국의 야당은 그것을 정치적으로 잘 사용하는 것과 달리 미국의 야당은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인다. 무엇이 양국 간 차이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가? 만약, 상원 내에서 야당의 비중이 높거나, 하원이 인준청문회를 수행한다면 미국의 인준청문회 모습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는가?
 - 미국은 인준청문회 역사가 길다. 그 기간에 PAS Positions도 증가했는데, 이는 상원이 통과시킨 법률로 인해 새롭게 만들어진 공직의 수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상원은 자신의 의정활동으로 공직을 만들었으니, 그 직을 수행할 책임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신중하게, 즉 정치적 대립에 함몰되지 않고 심사한다. 그 결과 인준청문회가 상대적으로 비당파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상원 인준 과정에서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를 상원도 ‘선택’한다는 분위기를 형성하여 향후 해당 후보자가 공직에 있을 때 상원과 협력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의도도 있다고 본다.
 - 다만, 의사중계방송(C-SPAN) 도입 이후 청문회 모습도 다소 변화했다고 생각한다. 중계방송을 하기 전에는 인준청문회를 조용하게 진행했는데, 중계방송 도입 이후에는 좀 더 드라마틱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



5) 주요 면담인사 인적사항

| | | |
|------|---|--|
| 성명 | 폴 공 (Paul <u>Kong</u>) |  |
| 직위 | 루거센터(Lugar Center) Senior Fellow | |
| 학력 | 미국 미시간대학교 학사 미국 가톨릭 대학교 법학대학원 졸업 | |
| 주요경력 | <p>애틀랜틱 카운슬 객원 선임연구원</p> <p>Richard R. Lugar 전 미상원외교위원장 정부보좌관</p> <p>Chuck Hagel 전 미상원의원 (오바마 정권 국방장관) 정책실장</p> <p>미상공회의소 국제본부 이사</p> | |

5. 의회조사국 방문



1) 방문일시: 2024년 1월 24일 수요일 10:00-11:30

2) 참석자

| 국회입법조사처 | 미국 의회조사국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정준화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박단비 기획협력담당관실 대외협력 주무관- 유지현 주미국대사관 입법연구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T. J. 홀스테드(T. J. Halstead) 의회조사국 부국장- 마크 매닌(Mark Manyin) 아시아 전문조사관 |

3) 의회조사국

□ 개관

- 1914년 미국 의회는 의회도서관(the Library of Congress) 내에 입법참고원(the Legislative Reference Service)을 설립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 1970년 입법재편법(the Legislative Reorganization Act of 1970)을 통해 현재와 같은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법정의무를 대폭 확대함
- 현재 로버트 R. 뉴렌(Robert R. Newlen)이 임시 국장(Interim Director)을 맡고, T.J. 홀스테드(T.J. Halstead)가 부국장임
 - T.J. 홀스테드 부국장은 연구 및 관리, 서비스 정책의 수립 및 시행, CRS 대변인 및 연락 역할, 검토실과 의회 프로그램 커뮤니케이션실을 감독을 담당함
 - ※ (검토실) 연구보고서 등의 정확성·객관성·비당파성을 검토함으로써 적시에 연구 및 분석 지원에 대한 의회의 기대를 충족하도록 보장함
 - ※ (의회 프로그램 커뮤니케이션실) 의회 고객을 위한 세미나 및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의회에 대한 지원에 참여하고, 고객을 위한 비디오를 포함한 멀티미디어를 제작하고, 미디어 요청, 소셜 미디어, 웹사이트 및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관리함

□ 기능(mi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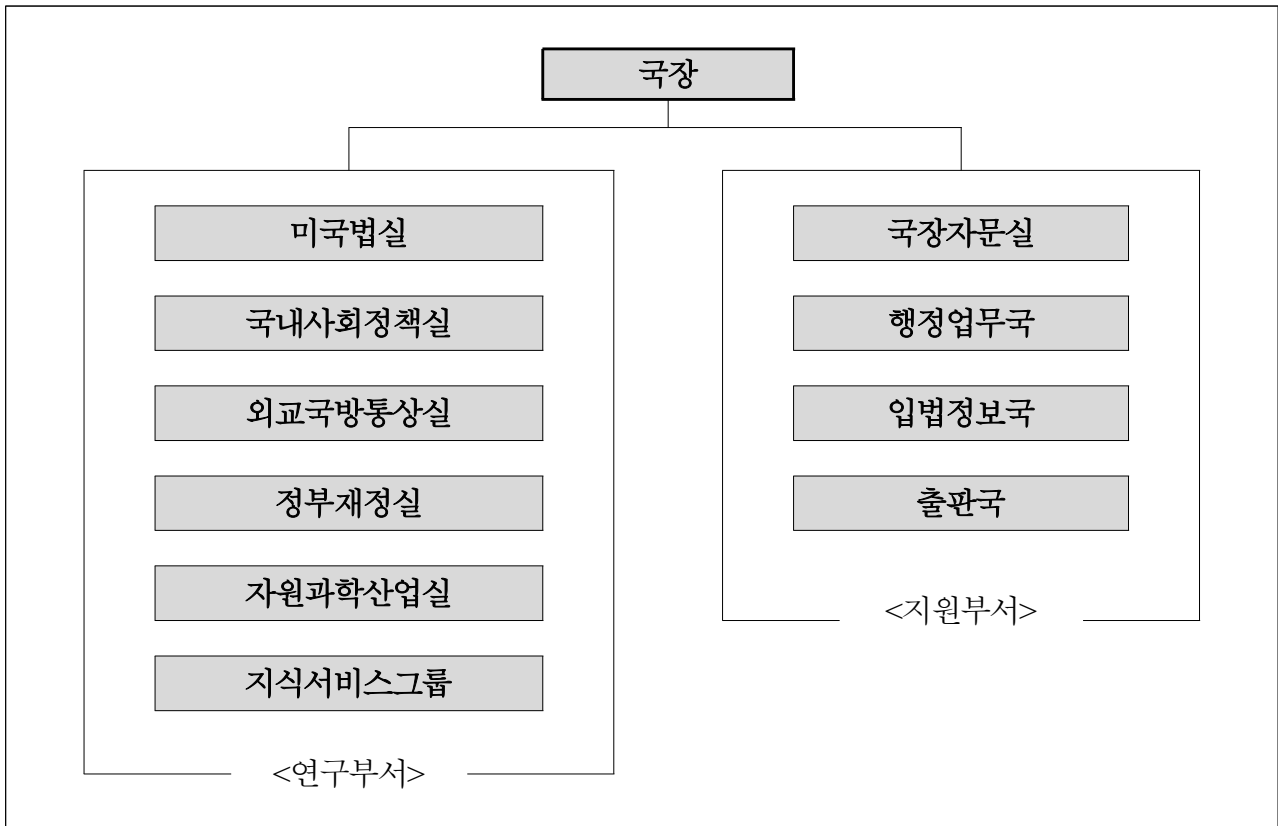
- CRS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음
 - 연방 의원의 조사분석 요구에 대해서 회답서(confidential memorandum) 제공
 - 모든 정책분야의 입법 현안과 정책대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보고서 발간
 - 국회의원 대면보고, 세미나 개최, 위원회 청문회 증언 등 다양한 의정활동 지원
- CRS는 의회에 최고 품질의 연구(research), 분석(analysis), 정보(information), 기밀 상담(confidential consultation, 맞춤형 기밀 회답을 포함)을 제공하여 의회가 정부와 대등한 수준에서 입법권 행사, 대표성 제고, 정부 감독 기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업무수행의 원칙(Values)

- 기밀성(Confidential) : 국회의원 및 보좌진의 질문과 요구, CRS의 회신은 기밀성을 유지함. 이를 통해 국회의원 및 보좌진은 자유롭게 CRS 전문가와 소통하고, 문제를 탐색하고, 논쟁하고, 특이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음
- 공신력(Authoritative) : CRS 전문가는 편견 없이 엄격한 연구 방법론을 적용함. 모든 중요한 가정을 제시하고 설명하며 정당화하며, 데이터 오류를 조사하고 재점검하며, 가능한 자원을 모두 사용하고, 모든 사실에 대한 진술을 재확인하고, 모든 정보원을 문서화하고 검증함
- 객관성 및 비당파성(Objective and Nonpartisan) : CRS는 객관적이고 비당파적인 분석을 수행함. CRS 전문가는 편향 없이 문제를 평가하는 데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다층적인 검토 과정을 통해 CRS가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함

□ 조직체계

- CRS는 의회도서관 조직도에 포함되어 있지만, 기능적으로 독립임
- CRS에는 600여 명이 재직 중이며, 이 중에서 400여 명은 연구부서에 근무하고, 200여 명은 지원부서에 근무함



- 연구부서 : 5개 연구부서(research division)에 400여 명의 정책분석가(policy analysts), 변호사(attorneys), 정보 전문가(information professionals)가 근무하고 있음
 - 미국법실(American Law) : 입법 과정의 일부로 발생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의회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한 헌법 및 법률적 사항에 대하여 의원들과 그들의 직원들에게 객관적이고 권위적이며 비당파적인 법률 분석과 자문을 제공
 - 국내사회정책실(Domestic Social Policy) : 국내 사회 정책과 프로그램의 광범위한 영역에 대한 의회의 조사와 분석을 제공. 소속 분석가들은 그들의 연구에 프로그램과 입법 전문성, 정량적 방법론과 경제 분석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사용
 - 외교국방통상실(Foreign Affairs, Defense and Trade) : 의회를 위한 중대한 세계 안보, 정치, 경제 발전에 따르는 8개의 지역 및 기능 분과로 구성. 미국과 다른 나라의 관계, 테러·난민·국제경제 문제와 같은 초국가적 이슈,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국제기구, 미국의 외국원조 프로그램, 미국 국무부의 예산과 기능, 국가안보정책, 군사전략, 무기체계, 군사운영, 미사일방어시스템,

국방예산, 미국의 군사기지, 그리고 통상 관련 입법·정책, 무역수지와 해외투자, 관세 및 수출입 관련 정책 등에 대해 지원함

- 정부재정실(Government and Finance) : 의회와 의회지원조직, 행정부, 사법부의 조직, 구조, 운영 및 관리, 세출 및 입법 과정을 담당함. 재정 문제, 세금과 이자율, 행정부 조직, 정부 인사, 정부의 데이터 정책, 정부 간 관계, 재난 및 테러 행위에 대한 연방 계획 및 대응, 인구 조사, 선거구 조정, 선거, 선거 자금, 로비 및 정당, 사이버 보안 등의 업무를 담당함
- 자원과학산업실(Resources, Science and Industry) : 자원과 관련하여 환경, 물 및 기타 천연자원 문제, 농업, 식품, 수산 및 에너지 등에 관하여 의회를 지원함. 과학 및 기술은 일반적인 과학 및 기술 문제, 민간 및 군사 연구 개발, 정보 기술 및 통신, 우주 및 지구 과학 등에 관하여 의회를 지원함. 산업 및 인프라에 관하여 교통 및 관련 인프라, 산업 시장 구조 및 규제, 부문별 산업에 관하여 의회를 지원함
- 지식서비스그룹(Knowledge Services Group, KSG) : 5개 분야별 전문가에게 연구지원 서비스를 제공함. 기관 정보 및 데이터의 수집, 조직화 및 보존을 포함한 지식 관리를 책임지고 있음
- 지원부서(infrastructure office)에 200여 명이 근무함
 - 국장자문실(Counselor to the Director) : CRS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법적, 정책적 질문과 문제의 범위, 의회도서관 내의 다른 서비스 부서 및 기타 입법 지원 기관과의 관계를 조사하고 정의함. 국장, 부국장 및 기타 고위 경영진에 대한 주요 법적, 정책적 조언자 역할도 수행
 - 행정업무국(Office of Administrative Operations) : CRS의 조직·인사·예산·대외협력 등에 관한 전반적 운영과 전략적 계획을 관리하고 모든 인적자원 관리 역량을 감독함. 지원 기능이나 운영을 수행하고 전략적 인적자원 문제에 대한 협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주요 연락 역할을 담당함
 - 입법정보서비스국(Office of Legislative Information Service) :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연구결과를 제공하고 CRS 연구결과물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함. 또한 입법정보에 대한 정확하고 시의적절하며 완전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부서 및 의회 내·외부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함. 입법 문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고, 의원 및 직원 데이터 기록을 관리함

- 출판국(Office of Publishing) : CRS의 보고서 및 간행물에 대한 편집, 시각디자인, 출판, 관리, 큐레이션 등을 담당함

4) 주요 면담 내용

□ 입법영향분석 소개 및 의견 교환

- CRS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입법영향분석을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입법영향분석은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할 때 사전에 그 영향을 분석하는 것으로, 법률안 심사 과정에 객관적·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더 좋은 법률 만들기에 기여하는 것임
- CRS는 공식적으로는 법률안에 대한 영향분석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고 있으며, 대신 조사분석의 일환으로 좁고 제한적 범위에서 법률안에 대한 영향분석 결과를 회답하고 있지만 이 역시 제도적으로 통상의 조사분석과 구분되어 있지 않음
 - 일반적으로 의원들은 법률안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다양한 정책 옵션의 영향에 대해서 CRS에 조사분석을 요구하며, CRS는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영향을 분석하고 경우에 따라 대안을 제시하기도 함

□ 정량적 조사분석 방법의 활용

- 조사분석 요구 중에서 아주 정확하고 구체적인 데이터와 통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CRS는 정부로부터 관련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함
- 데이터 분석은 단순한 통계값 도출에서부터 분석모델을 만들어 결과값을 추정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CRS는 구성원들이 최대한 정량적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 내부 구성원의 연구 및 조사분석 협력 방안

- 입법지원 수요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 복잡해지면서 빠른 시간 내에 내부 구성원이 협력하여 연구 및 조사분석을 완성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짐
- 내부 구성원간 협력은 CRS의 기본가치인 객관성, 공식성, 비당파성, 포괄성을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기도 함

- 협력을 구현하는 방법은 업무지시, 순차적 조사분석, 주기적 협력회의 등임
 - (업무지시) 특정 연구 및 조사분석에 대해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장급에서 어떤 조사관들이 적절한지 논의한 다음 빠짐없이 참여하여 협력하도록 함
 - (순차적 조사분석) 위원회에서 법안에 대해 검토할 때, CRS에게 법안에 대한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분석을 요청하기도 함. 이 때 한 조사관이 자신의 분야에 대해서 분석을 한 다음 그 내용을 다음 조사관에 전달하여 순차적·연속적으로 조사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주기적 협력회의) 연방정부의 주요 정책을 담당하는 조사관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기적으로 모여서 협력회의를 가짐. 공식적인 방식뿐만 아니라, 온라인 영상회의, 브라운백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함

□ 지식서비스그룹(KSG) 구성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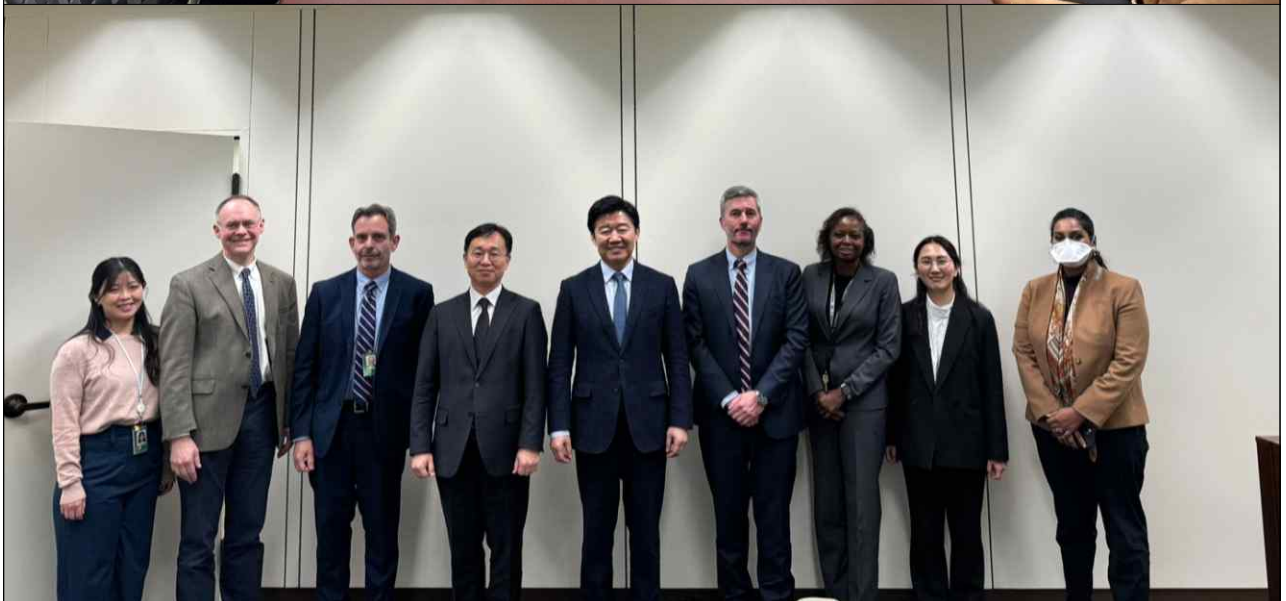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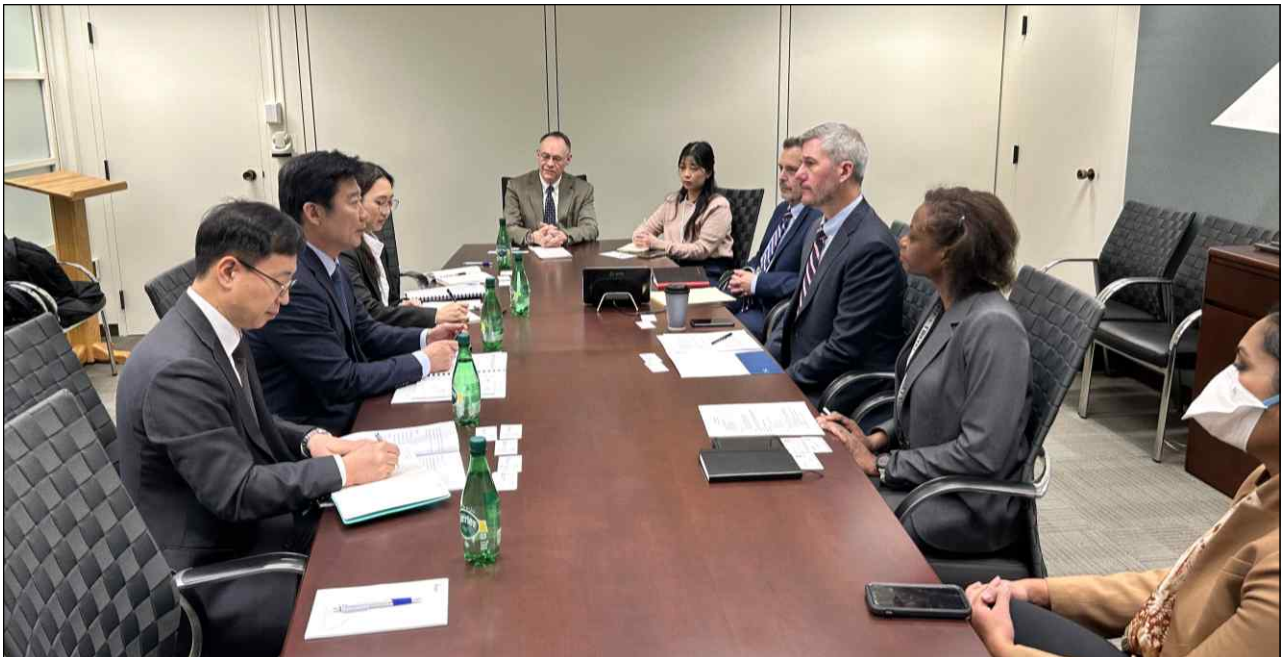
- KSG는 4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고문헌 조사, 정보자원 수집·관리를 담당함
 - 참고문헌 조사: 사서(librarian)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회 및 CRS 5개 연구부서의 조사관들이 요구하는 내용에 적합한 참고문헌(reference)을 찾아서 제공함
 - ※ 내용을 조사·분석하는 것 보다는, 의회 및 CRS 조사관이 요구하는 내용에 가장 적합한 참고문헌의 서지 또는 참고문헌 자체를 제공함
 - 문헌정보 수집: CRS가 이용할 서적 및 디지털 데이터를 수집·조직화·관리
 - 정보자원 관리: CRS가 생성한 기록물 관리, CRS 포털 관리, CRS와 연계되어 있는 외부 DB의 연계 및 활용 관리

□ 인력의 신규 채용 방식

- CRS는 공석(vacancy)이 발생하면 해당 직위를 전국적으로 공모하여 채용함
 - 별도의 문답·서술식 채용시험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의 이력서를 검토하고 인터뷰를 통해 적격자를 선별하는 방식임
- 유능한 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공석이 발생할 경우 적합한 대학 및 전문가그룹에 채용 정보를 제공하는 아웃리치(out reach) 팀을 운영함


□ 국회입법조사처와 CRS의 연구협력

- 과거에는 특정 의원·위원회가 한국 문제에 관심을 가졌지만, 최근에는 다수의 의원·위원회가 소관 사안의 외국 사례 조사에 한국을 포함시키면서 한국에 대한 조사분석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CRS는 국회입법조사처와의 연구협력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다만 현실적인 여건상 MOU와 같은 공식적인 연구협력 체계를 갖는 것은 쉽지 않음
- 따라서 국회입법조사처와 CRS의 연구자간 상호 협력, 국회입법조사처의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 참여와 같은 방식으로 기관 간 연구협력이 가능할 것임



5) 주요 면담인사 인적사항

| | | |
|------|--|---|
| 성 명 | T J 홀스테드 (T. J. Halstead) |  |
| 직 위 | 미국 의회조사국(CRS) 부국장 | |
| 학 력 | 1991 ~ 1995 캔자스 대학교 인류학 학사 1995 ~ 1998 캔자스 대학교 JD | |
| 주요경력 | 1998 ~ 2007 CRS 입법조사관 | |
| | 2007 ~ 2008 CRS 미국법실 조사팀장 2008 ~ 2015 CRS 미국법실 부실장 2015 ~ 2016 CRS 국장실 선임자문관 2016 ~ CRS 부국장 | |

| | | |
|------|---|---|
| 성 명 | 마크 매닌 (Mark Manyin) |  |
| 직 위 | 아시아 전문조사관 (Asian Affairs Specialist) | |
| 학 력 | 1986 ~ 1990 터프츠대학교 국제학 전공 1999 터프츠대학교 일본통상·교섭학 박사 | |
| 주요경력 | 2005 ~ 2010 외교위원회 위원 | |
| | 2006 ~ 2008 CRS 아시아 조사팀 팀장 2010 ~ 2011 히타치 펠로우십 외교위원회 위원 2013 ~ CRS 아시아 조사팀 팀장/ 전문조사관 | |

6. 하원 법제실 방문



1) 방문일시: 2024년 1월 24일 수요일 14:00-15:30

2) 참석자

| 국회입법조사처 | 미국 하원 법제실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정준화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박단비 기획협력담당관실 대외협력 주무관- 김경신 주미국대사관 입법관- 유지현 주미국대사관 입법연구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웨이드 벌루(E. Wade Ballou Jr.) 하원 법제실장- 워렌 버크(Warren Burke, Esq.) 선임 변호사- 앨리슨 길리(Allison Gilley) 법제보좌관 |

3) 하원 법제실

□ 연혁

- 1911년 콜럼비아대학교 공법학 교수 조셉 P. 챔버레인(Joseph P. Chamberlain)이 입법초안조사기금(Legislative Drafting Research Fund)을 설치하였음
- 1916년 입법초안조사기금은 연방 의회도서관 법률사서 미들턴 비만(Middleton Beaman)에게 의원의 법률안 작성을 연방의회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을 연구하도록 했고, 하원의 세입위원회(The House Ways and Means Committee)가 각각 1916년, 1917년, 1918년의 세입법(Revenue Act)을 개정할 때 미들턴 비만의 도움을 받음
 - 미들턴 비만은 당시 의원의 전권으로 생각되던 법제 업무를 전문가들이 지원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역설하여 미국 연방의회 법제실의 설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후에 미국 하원사무처 법제실장이 되어 1941년까지 재임함
- 법률안 초안작성시 법률전문가의 지원이 유익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하원 세입위원회는 상원과 하원에 각각 법제기구를 설립하는 내용을 1918년 세입법(Revenue Act) 제1303조에 추가하여 1919년부터 시행함
- 1924년 세입법에서는 법제기구의 명칭을 현재와 같은 법제실(Office of the Legislative

Counsel)로 하고, 부서장을 법제실장(Legislative Counsel)으로 표기함

- 법제실의 업무는 1970년 입법재편법(Legislative Reorganization Act) 제5장에 따라 운영되며, 제502조에서 중립성과 기밀성의 요구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업무수행 방식

- 기밀성(Confidentiality) : 의원실의 입법 요구는 비밀이며, 외부로 공개하지 않음
 - 동일한 주제에 대해 여러 법률안을 작성하더라도 그 사실을 공개하지 않음
- 비당파성(Impartiality) : 특정 정파에 유리하게 성안을 하지 않고, 중립적이고 명확한 표현을 사용함. 특정 제안이나 정책의 채택 또는 거부를 옹호하지 않음

□ 주요 서비스

- 의원이 하원에 제안할 새로운 법률안 및 동의안
-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시할 법안 및 동의안의 개정안(위원회 대안)
- 하원 위원회가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법안을 보고할 때, 해당 수정 조항이 법안 통과 이후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보여주는 조문 비교 출력물

4) 면담 주요 내용

□ 하원 법제실 운영 현황

- 법제실은 하원 의원의 법안 작성을 지원하고 조언하고 있으며, 85명의 인력 중에서 변호사가 62명, 박사 등 전문가가 8명임
- 입법 쟁점에 대한 각 의원실의 입장과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법제실은 비당파성과 기밀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결과 법제실에 대한 의회의 신뢰도가 높음
- 법제실은 3~5명 정도의 법제관으로 구성된 팀을 단위로 운영되고 있으며, 업무의 우선순위는 위원회가 요구하는 수정안 작성이 가장 높고 의원이 요구하는 법률안 작성이 그 다음임

□ 전문가 충원 및 교육훈련 방식

- 일반적으로 로스쿨 졸업자를 대상으로 신규 인력을 충원하며, 재직하는 동안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하지만 담당 분야가 변경되기도 함

- 신규 인력에 대해서는 2년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데,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아니며 업무의 난이도와 책임성을 높여 나가는 과정으로 보면 됨
 - 처음에는 단순한 법제 업무를 맡고 3~6개월은 빠르게 하지 않고 정확도와 완성도를 높임. 이 과정을 거치면서 법안 작성에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배우고 그 정보를 얻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함. 그 이후 복잡성과 속도를 높임

□ 입법영향분석 소개 및 의견 교환


- 한국에서는 의원 발의 법률안이 상당히 많은데, 최근 의원 발의 법률안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영향분석 도입을 준비하고 있음
- 미국 의회에서는 명시적으로 법률안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지는 않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영향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법률안을 만드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음
 - 의원 및 위원회는 청문회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입법의 방향을 설정하고, 의회예산국(CBO)이 세부적인 모델을 가지고 세수 예측을 하면 이 예측에 대해서 의원들이 논의하여 합의안을 만들고, 이것을 기반으로 법제실이 법률안을 작성함
- 법률안에 대한 경제적 비용·편익 산정, 사회적 비용·편익 산정에 대해서 각 정당별 입장이 다를 것이므로 국회입법조사처는 그 결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 의회 내·외부의 연구협력

- 법제실은 의원·위원회에서 입법 요구가 들어오면 CRS 의견을 듣도록 권유하거나, 의원실-법제실-CRS 공동으로 온·오프라인 회의를 진행하는 등 CRS 전문가들과 적극적인 연구협력을 하고 있음
- 입법 수요가 다양해지고,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기술 활용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필요하므로 향후 하원 법제실은 국회입법조사처를 포함한 한국 국회 기관들과의 연구협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임



5) 주요 면담인사 인적사항

| | | |
|------|-------------------------------|---|
| 성명 | 웨이드 벌루 (E. Wade Ballou Jr.) |  |
| 직위 | 하원 법제실장 (Legislative Counsel) | |
| 학력 | 1980 버지니아 대학교 공과대학교 학사 | |
| | 1983 버지니아 대학교 JD | |
| 주요경력 | 1983 ~ 1996 미 연방하원 법제실 고문 | |
| | 2016 ~ 미 연방하원 법제실장 | |

7. 뉴욕한인회 방문



1) 방문일시: 2024년 1월 25일 목요일 15:00-16:30

2) 참석자

| 국회입법조사처 | 뉴욕한인회 |
|---|--|
| -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 정준화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 박단비 기획협력담당관실 대외협력 주무관 - 정상훈 주뉴욕총영사관 입법관 | - 김광석 뉴욕한인회 회장 - 김성진 뉴욕한인회 전략기획수석부회장 - 부용운 뉴욕한인회 행정상임수석부회장 - 이승우 뉴욕한인회 정무법률수석부회장 - 김자경 뉴욕한인회 홍보수석부회장 - 뉴욕한인회 이사 외 |

3) 뉴욕한인회

□ 연혁

- 1960년 창립된 뉴욕한인회(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Greater New York, KAAGNY)는 50만 한인동포의 권익신장과 위상강화를 위해 일하고 있음
- 뉴욕한인회는 지난 1960년 초대 서상복 회장을 시작으로 35인의 전직 회장을 거쳐 김광석 회장이 경선을 통해 38대 회장으로 선출됨
 - 회장 임기는 2년으로 50만 한인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됨

□ 주요 기능

- 비영리단체인 뉴욕한인회는 지역, 직능, 봉사, 사회, 문화, 교육 등 500여 개가 넘는 동포사회의 단체들과 함께 동포사회가 미국 주류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하는 데에 주력함
- 뉴욕한인회는 미주한인의 이민 역사가 새로운 백년을 맞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타민족과의 연대를 모색하며, 한인 2세들에게는 한민족의 정체성을 심어 한인사회의 새 역사를 창조해 나아가는 데 기여함

4) 면담 주요 내용

□ 재외국민투표 운영에 대한 의견

- 공관투표 방식은 불편함이 많고, 특히 뉴욕의 경우에는 유권자도 많은데 투표소가 하나밖에 없어서 투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큼
- 국내에서 재외국민투표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다르고, 선거관리 비용을 따지다 보면 재외동포의 투표율을 높이는 데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데, 정치적·정책적 타산만으로 따지지 말고 재외동포의 참정권이라는 헌법상 권리 측면으로 접근해야 할 것임
- 한인사회는 기존 한인의 비중이 감소하고 직장인·유학생 등의 비중이 증가하는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은 국내 정치 참여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적합한 재외국민투표 방식을 고려해야 할 것임

□ 복수국적의 문제 및 과제

- 한인 청년들이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인해 미국 연방정부 취업이 제한되는 문제는 합리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음
- 장년층의 국적회복 요건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적회복을 위해 반드시 선행적으로 한국에 거소가 있어야 하는지, 국적회복 연령으로 65세가 적절한지에 대한 다양한 비교·분석이 중요함
 - ※ 외국에 살면서도 한국에 기여할 수 있도록 외국 거주인도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것을 고려해 달라는 의견, 경제활동능력이 있는 교포들이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65세 연령 조건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 등이 있었음
- 한국의 의료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 국적 요건, 한국내 거소 요건, 혜택의 범위 등이 복잡하고 자칫 공정성의 시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복수국적 범위 확대는 국내의 저출산과 지방인구 소멸 문제를 막고, 국내 경제에 대한 재외국민의 투자와 기여를 확대하고, 외국의 우수 인재를 적재적소에 확보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음

□ 이민의 유입과 유출


- 한인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인원이 필요한데, 최근 미국으로의 이민 유입이

예전 같지 않아서 예의주시하고 있음

- 국내에서는 한국으로의 이민 유입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 지방의 경제활동인구 확보를 위한 자자체 광역비자 허용방안, 정부에 이민청을 설치하고 지자체에 이민국을 설치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음
- 한국인의 이민 유출, 외국인의 이민 유입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므로 양자의 합리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이 과정에서 효과적인 이민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민 경험이 있는 재외동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임



5) 주요 면담인사 인적사항

| | | |
|------|---|---|
| 성명 | 김광석 |  |
| 직위 | 뉴욕한인회(KAAGNY) 회장 | |
| 학력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 학사 컬럼비아대학교 사회사업학 석사 | |
| 주요경력 | 미주한상총연 재단 이사장 한미헤리티지소사이어티 이사장 뉴욕한인봉사센터(KSC) 회장 제38대 뉴욕한인회(KAAGNY) 회장 | |

8. 유엔개발계획(UNDP) 방문



1) 방문일시: 2024년 1월 26일 금요일 09:00-10:30

2) 참석자

| 국회입법조사처 | UNDP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정준화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박단비 기획협력담당관실 대외협력 주무관- 정상훈 주뉴욕총영사관 입법관- 최충희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주재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르코스 아시야스 네토(Marcos Athias Neto) UN 사무차장보(Assistant Secretary General, ASG) / UNDP 정책·프로그램국장(Director of the Bureau for Policy and Programme Support(BPPS)) |

3) UNDP

□ 연혁

-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는 유엔총회(UNGA)의 하부 조직으로 1966년 창설됨
 - 1949년에 창설된 유엔 확대 기술 지원 계획과 1958년에 창설된 유엔 특별 기금을 통합하여 1966년에 유엔 총회에 의해 설립되었음

□ 설립 목적 및 주요 기능

- UNDP의 목적은 가난을 끝내고, 민주적인 통치, 법치, 그리고 포용적인 제도를 건설하는 것임
- UNDP는 변화를 지지하고,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 국가들의 지식, 경험, 자원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함
 - 전 세계 170개 국가와 영토에서 빈곤을 근절하고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활동함
 - 국가들이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리더십 기술, 파트너링 능력, 제도적 능력을 개발하고 회복력을 구축하도록

지원함

- 최근 UNDP는 지속가능발전, 민주적 거버넌스와 평화구축, 기후와 재난 회복력에 초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음
- UNDP는 6가지 중요 이슈에 대한 전문적인 대안과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음
 - 빈곤과 불평등 : 사람들이 빈곤선을 넘어 계속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향상된 능력에 투자함으로써 기회의 불평등을 해결
 - 거버넌스 : 국가들이 예측적 접근과 더 나은 위험 관리를 통해 거버넌스 시스템의 미래를 증명함으로써 새롭게 등장하는 복잡성을 해결하도록 지원
 - 회복력 : 분쟁, 기후 변화, 재해 및 전염병을 포함한 다양한 충격과 위기에 대한 회복력을 구축하는 국가와 지역 사회를 지원
 - 환경 : 자연과 환경을 국가 경제와 계획의 중심에 두고, 정부가 그들의 자연 자산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가치를 부여하도록 지원
 - 에너지 : 가장 뒤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에너지 접근성을 높이고 정의롭고 포괄적인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가속화
 - 성평등 : 성평등을 지향하는 경제적·정치적·사회적 시스템으로의 개혁 지원

□ 거버넌스 및 의회발전(Parliamentary development) 지원

- 지난 60여 년간 UNDP는 전 세계 170여 개 국가와 영토에서 깊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고, 이를 통해 UNDP는 많은 국가가 겪는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거버넌스 과제에 대해 풍부하게 이해해 왔음
- 거버넌스 분야에서는 크게 4가지 기능을 수행함
 - Inclusive and future-smart public goods and services
 - Democratic institutions and processes
 - Inclusive public sphere
 - Integrating governance principles in development
- 이 중에서 ‘Democratic institutions and processes’ 안에 “Parliamentary development”에 대한 지원이 있음

4) 주요 면담 내용

- UNDP 및 정책·프로그램국(Bureau for Policy and Programme Support, BPPS) 소개
 - UNDP는 SGD's 달성을 지향하며, SGD's의 17개 아젠다를 담당하는 부서의 사무를 통합적 관점에서 조율하고 관리함
 - SDGs의 16번째가 ‘평화, 정의 그리고 건강한 제도(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이며 여기에 좋은 정부·의회가 포함됨
 - 이 업무를 담당하는 정책·프로그램국(BPPS)은 세계 여러 국가의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 업무를 계속해 왔음

- 개도국 의회발전을 위한 국회입법조사처와 UNDP의 협력
 - 국회입법조사처는 매년 전세계 의회조사기구 담당자들이 모이는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데, 더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여 의회발전과 입법지원 경험을 논의할 수 있도록 UNDP가 참여국가 연계 및 초청장 발송 등을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2024년은 전세계 40억 명이 선거를 치르는 ‘super election’의 해이고, 많은 개도국들도 선거를 하게 됨. 한국과 국회입법조사처의 경험과 전문성이 개도국의 선거와 정치 발전에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국회입법조사처의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입법영향분석의 소개 및 의견 교환
 -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영향분석을 준비하고 있음. 유럽연합의 경우 EPRS의 입법영향분석이 입법과정 제도화되어 있지만, 한국에서는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제도화를 준비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으로 그 가능성을 점검하였음
 - 입법영향분석은 좋은 법률 만들기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이와 동시에 입법과 법률집행의 책임성을 강화시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임
 - 사전입법영향분석을 통해 법률안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예측한다면, 향후 행정부가 그 법률을 집행할 때 부정적 효과는 줄이고(mitigating), 긍정적인 효과는 확대하는(maximizing)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임
 - 사후입법영향분석을 통해 법률 집행의 부정적 효과를 발견해 낸다면, 행정부가 해당 정책을 집행하는 것을 중지시켜(holding) 입법·정책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임

-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은 개도국의 입법 및 정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UNDP와의 협력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회입법조사처의 시범사업 보고서를 영문으로 번역하여 UNDP와 개도국에 제공하여 입법영향분석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입법영향분석이 주요 선진국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 향후 입법영향분석의 방법론과 절차에 대해서도 국회입법조사처와 UNDP와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통해 개도국 입법·입법지원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기타 연구협력 방안 논의

- 국회입법조사처는 인공지능·기후변화 등 새로운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UNDP의 해당 분야 전문가와 연구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국회입법조사처와 UNDP는 ‘UNDP 서울정책센터’를 통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연구협력 및 의견교환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UNDP 서울정책센터는 서울시 성북구 고려대학교 국제관 4층에 있음



5) 주요 면담인사 인적사항

| | | | |
|------|---|--|---|
| 성명 | 마르코스 아시아스 네토 (Marcos Athias Neto) | |  |
| 직위 | UN 사무차장보(Assistant Secretary General, ASG) / UNDP 정책·프로그램국장(Director of the Bureau for Policy and Programme Support, BPPS) | | |
| 학력 | 1991 ~ 1993 리스본대학교 법학 학사 1997 ~ 1999 런던대학교 동양아프리카학대학(SOAS) 법학 석사 | | |
| 주요경력 | 2000 ~ 2011 CARE International 아시아·라틴 아메리카 지역 매니저 CARE UK, CARE 전무이사 - G20 지속가능금융워킹그룹(Sustainable Finance Working Group) 사무국장 - UNDP 지속가능금융허브(Sustainable Finance Hub) 국장 2023 ~ UN 사무차장보 / UNDP 정책·프로그램국장 | | |

9. 기타 방문 및 면담



1) 워싱턴 D.C. 한국혁신센터 방문

□ 방문일시: 2024년 1월 22일 월요일 11:30~12:30

□ 참석자

| 국회입법조사처 | 워싱턴 D.C. 한국혁신센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 정준화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 박단비 기획협력담당관실 대외협력 주무관 - 김경신 주미국대사관 입법관 - 유지현 주미국대사관 입법연구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류시훈 센터장 |

□ 워싱턴 D.C. 한국혁신센터(KIC)

- 201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스타트업 육성기관인 ‘워싱턴 D.C. 한국혁신센터 (Korea Innovation Center Washington D.C., KIC DC)’가 설립되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간협력기반조성사업」 일환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4개 센터(북경, 워싱턴, 실리콘밸리, 베를린)가 운영 중
- KIC DC는 국내 스타트업의 미국 진출과 과학기술 R&D의 글로벌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함

| 구분 | 주요 기능 |
|----------------------|---|
| 기술 혁신 (Innovat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혁신적 기술을 미국에 소개하는 국경 간 기술교류 • 한국 스타트업과 미국 기업간 R&D 협력 촉진 • 한국 스타트업의 미국 시장 성공전략 지원 |
| 기업 육성 (Incubat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멘토링 및 교육 • 특별 육성 서비스 제공 : 오피스 공간 제공, 미국 법인설립 지원, 초기 시장조사 지원, 마케팅 및 언론홍보 지원 등 |
| 연계 지원 (Integrat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와의 연계 지원 : 미국 정부의 공공조달 및 보조금과 연계 지원 • 투자자와의 연계 지원 : 스타트업과 미국 투자자 연계 지원 • 멘토와의 연계 지원 : 멘토 또는 자문위원회 연계 지원 |

□ KIC DC 운영 현황 및 애로사항

- 민간이 운영하는 스타트업 지원기관은 대상 기업을 선정하여 직접 투자하고 육성하는 방식이지만, KIC는 직접 투자를 하지 못하고 대신 스타트업이 어떻게 외부 투자를 받고, 어떻게 시장에 나가는지 등에 대한 정보·기회·컨설팅을 제공함
 - 이와 달리 외국에서 운영하는 정부·공공 스타트업 지원기관은 유망 기업을 선정하여 직접 투자를 하는 사례가 있음
- 직원 인건비, 기관 운영비, 사업비 등이 한국의 예산체계와 지급기준에 따라 편성되어 있어서 워싱턴 환경과의 정합성이 낮고, 예산 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음

□ 미국 창업 현장에서 본 우리나라 스타트업 경쟁력

- 스타트업 경쟁력은 팀 수준(quality), 기술력, 시장 대응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중에서 국내 스타트업의 팀 수준과 기술력은 외국과 크게 다르지 않음
 - 기술력은 상당히 좋고, 팀 수준의 경우 언어적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팀과 대등한 수준임
- 문제는 국내 스타트업이 미국 시장에 대한 전략이 부족하고 이해력이 낮다는 것임
 - 경쟁기업이 어디인지, 경쟁기업에 비해 자사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목표 고객이 어떠한 요구가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부족함

□ 향후 운영 계획

- 지금까지 교육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했지만, 앞으로는 스타트업의 성장에 함께 참여하는 방식을 확대할 계획임. 즉,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함께 잡는 방식임
- 규제 및 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대안 모색에 참여할 계획임
 - 스타트업이 만들어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좋은 규제·법률이 필요하므로 규제와 법률을 만들 때 스타트업의 입장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 국내 지방대학의 글로벌 진출에도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임
 - 글로컬(Global+Local) 사업 등을 통해 외국 진출의 기반·거점을 찾는 국내 지방대학에 대해서 KIC DC가 정보를 제공하고 컨설팅·네트워킹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주요 면담인사 인적사항

| | | |
|------|---|--|
| 성명 | 류시훈 (Sean Ryu) |  |
| 직위 | 한국혁신센터(KIC) 센터장 | |
| 학력 | 연세대학교 전자전기공학 박사 | |
| 주요경력 | <p>2005 ~ 2008 SK텔레콤 아메리카 비즈니스개발 국장</p> <p>2008 ~ 2015 SK텔레콤벤처스 수석</p> <p>2015 ~ 2016 인도어아틀라스 APAC 총괄</p> <p>2016 ~ 2018 대덕파트너스 파트너</p> <p>2018 ~ 2021 현대모비스 전무 이사</p> <p>2022 ~ 2023 ACVC파트너스 벤처 파트너</p> <p>2023.7. ~ 한국혁신센터 센터장</p> | |

2) (가칭)의회외교센터 예정 공간 방문

□ 방문일시: 2024년 1월 23일 화요일 13:30-14:30

□ 참석자

| 국회입법조사처 | (가칭)의회외교센터 건물 운영 주체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 정준화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 박단비 기획협력담당관실 대외협력 주무관 - 김경신 주미국대사관 입법관 - 유지현 주미국대사관 입법연구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장 - 김기영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 차장 |

□ (가칭)의회외교센터의 주요 기능은 미국 의회의 중요 이슈에 대한 정보를 한국 의회·의원에 제공, 한국의 정보를 미국 의회·의원에 전달, 국내 방문단의 의회외교 효과성 제고를 위한 컨설팅 수행, 언론·홍보 지원 등임

- 한·미간 중요한 정보의 수집·전달을 위하여 현장방문뿐만 아니라 온라인 웹세미나, 비공식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
- 단순한 통역서비스 지원을 넘어, 국내 방문단의 미국의 정치문화와 방문 상대방의 성향을 충분히 인지하고 대응하여 방문 목적을 달성하도록 컨설팅 기능을 수행

□ (가칭)의회외교센터 정착을 위하여 국내외 의회외교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운영하고, 국회와 워싱턴 의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로 초기 운영진을 구성하고 적절한 임무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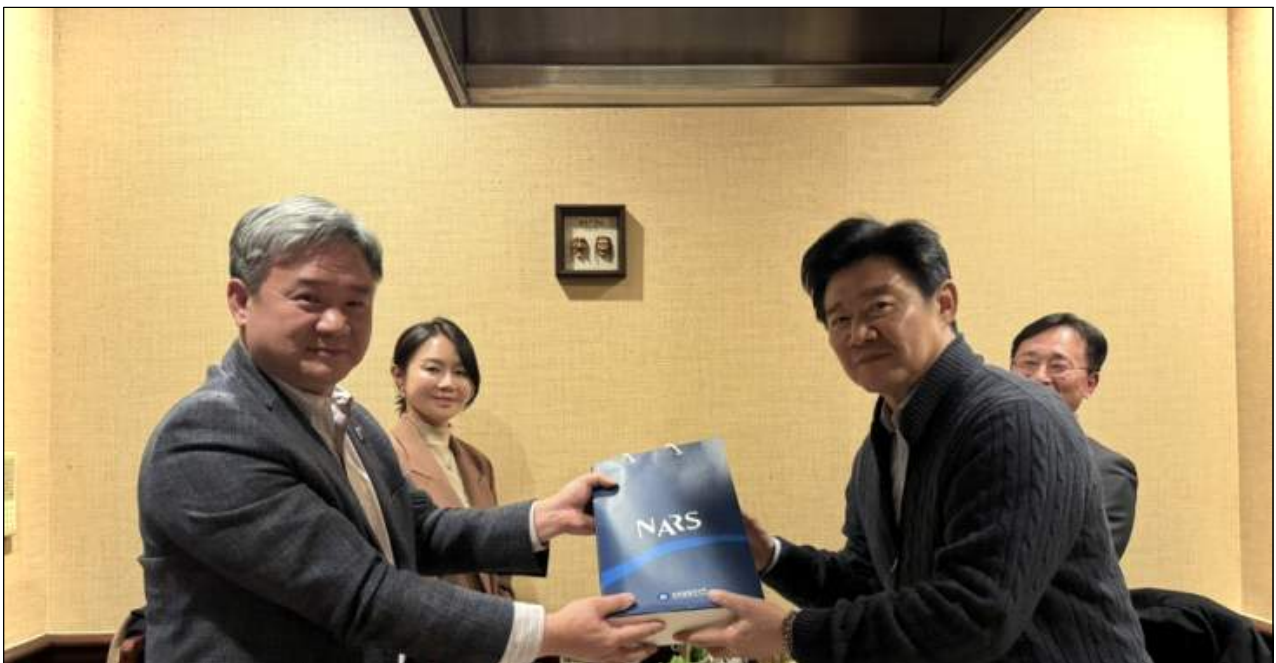
3) 워싱턴 한인회장 면담

□ 면담일시: 2024년 1월 23일 화요일 18:00-20:00

□ 참석자

| 국회입법조사처 | 워싱턴지구한인연합회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 정준화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 박단비 기획협력담당관실 대외협력 주무관 - 김경신 주미국대사관 입법관 - 유지현 주미국대사관 입법연구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승배(Steve S Lee) 회장 |

- 교포사회에 복수국적 확대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지만, 군대 문제와 미국 국적 포기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임
 - 현재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는 병역의무 회피를 위한 원정출산을 막기 위한 것이었는데, 허용 범위를 확대할 경우 미국에서 40대까지 지내다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문제가 증가할 우려가 있음
 - 국적회복 연령을 65세에서 낮출 필요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오랜 기간 살아온 미국 국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 대안 마련이 필요함



4) 조지워싱턴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부소장 오찬

□ 오찬일시: 2024년 1월 23일 화요일 12:00-13:20

□ 참석자

| 국회입법조사처 | 조지워싱턴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 정준화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 박단비 기획협력담당관실 대외협력 주무관 - 김경신 주미국대사관 입법관 - 유지현 주미국대사관 입법연구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연호 한국학연구소 부소장 |

□ 조지워싱턴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조지워싱턴대학교 한국학연구소(GW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GWIKS)는 2016년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지원(해외한국학 중핵대학 육성사업)으로 조지워싱턴대학 내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소장은 김지수 교수, 부소장은 김연호 교수
- ※ 조지워싱턴대학교 내에 국가 이름을 붙여 설립된 기관은 한국학연구소가 유일
- 한국정책포럼, 북한경제포럼, 북한프로그램, 미-한 전략적 소통 프로그램, 여름 단기 학부생 한국방문 프로그램, 한국학 전공생들의 교류 확대 등 진행

□ 의원외교·의회외교에 대한 의견


- 예산집행 이상의 목적이 없는 소모적인 워싱턴 방문은 지양해야 하며, 성공적인 공무출장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문 목적을 세우고 충분한 사전준비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가는 것이 필요함
- 과거와 같이 워싱턴 정가의 사람을 만나 그들의 ‘고견’을 들어야 할 필요성은 이제 찾기 어렵고, 한국이 처한 국내외 문제를 정확하게 미국 의회 관계자들에게 알리고, 그들과 함께 대안을 찾아가는 방식의 의원외교·의회외교가 진행되어야 함
- 충분한 정보의 확보와 교환을 위해 국회 내부뿐만 아니라 워싱턴 현지에서도 의원외교·의회외교를 지원하는 기능이 대폭 확대될 필요가 있음

□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학연구소의 연구협력

-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학연구소의 연구협력은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국회입법조사처가 한국학연구소로 교육과정을 보낼 수 있는 조건, 한국학연구소 또는 조지워싱턴대학 학생이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조사원·인턴 등을 경험할 수 있는 조건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을 것임



□ 주요 면담인사 인적사항

| | | |
|------|--|---|
| 성명 | 김연호 |  |
| 직위 | 조지워싱턴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부소장 (북한 무선통신 및 미국 대북정책 전문가) | |
| 학력 | 1987 ~ 1995 서울대학교 외교학 학사·석사·박사 1999 ~ 2001 존스 홉킨스 국제관계대학원(SAIS) 외교학 및 국제경제학 석사 | |
| 주요경력 | 2003 ~ 2008 Radio Free Asia 한국서비스 방송인 2008 ~ 2015 Voice of America 선임기자 2015.6.~ 2018.5. 존스 홉킨스 국제관계대학원(SAIS) 한미연구소 「USKI Washington Review」 에디터 겸 선임연구원 - 애틀랜틱 카운슬 부디렉터 2019.7 ~ 조지워싱턴대학 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겸 부소장 | |
| | | |

5)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

□ 간담회 일시: 2024년 1월 24일 수요일 18:00-20:00

□ 참석자

| 국회입법조사처 | 워싱턴 특파원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 정준화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 박단비 기획협력담당관실 대외협력 주무관 - 김경신 주미국대사관 입법관 - 유지현 주미국대사관 입법연구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정민(KBS), 최중락(MBN), 권준기(YTN), 김동현(연합뉴스), 박영준(세계일보), 정인설(한국경제신문), 하만주(아시아투데이) 김현(뉴스1) 워싱턴 특파원 |

□ 미국 워싱턴 및 뉴욕 공무출장 목적 및 주요 (예상)성과 논의

- 워싱턴에서는 의회조사국, 하원 법제실, 브루킹스 연구소, 헤리티지 재단을 방문하여 입법영향분석 수행 및 발전을 위한 시사점과 향후 연구협력을 논의하고, 상원의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 제도를 분석하여 우리 인사청문회 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함
- 워싱턴에 (가칭)의회외교센터를 설치하여 한·미 의원 및 정치인의 협력의 공간으로 활용하여 의원외교·의회외교의 성과를 높이는 기반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함
- 뉴욕에서는 재외동포 투표권과 복수국적 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한인회 의견을 청취하고, 개도국 의회발전을 위해 국회입법조사처와 UNDP와의 협력방안을 논의함



6) 뉴욕한국문화원(신축) 방문

□ 방문일시: 2024년 1월 25일 목요일 17:00-17:30

□ 참석자

| 국회입법조사처 | 뉴욕한국문화원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 정준화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 박단비 기획협력담당관실 대외협력 주무관 - 정상훈 주뉴욕총영사관 입법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천수 뉴욕한국문화원 원장 |

□ 뉴욕한국문화원 신축 건물은 2024년 2월 24일 공식 개관함

- 2009년 3월 뉴욕 맨하탄 32가 한인타운 인근에 부지를 매입한 이후 약 15년 만에 공사가 완료되어 뉴욕한국문화원·한국관광공사 등이 입주하게 되었음
- 건물 외관은 대한민국 5000년 역사를 상징하는 자기(세라믹), 나무, 도기(테라코타)를 사용해 지어진 건물을 유리상자가 감싸는 모습이며, 내부는 지하 2층, 지상 7층 구조에 196석 규모의 다목적 공연장, 정원, 도서자료실, 부엌, 강의실 등으로 구성됨
- 접근성이 좋은 뉴욕 중심에 한국문화원을 개관함으로써 뉴욕과 미국에 한국문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고, 문화예술·관광·문화산업 등 상호 연관성이 높은 영역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7) 뉴욕 한인 라디오 방송(AM 1600 K-Radio) 출연

□ 출연 일시: 2024년 1월 26일 금요일 11:00-11:30

□ 참석자

| 국회입법조사처 | AM 1600 K-Radio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 정준화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 박단비 기획협력담당관실 대외협력 주무관 - 정상훈 주뉴욕총영사관 입법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경주 AM 1600 K-Radio 보도국장 |

□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등 미 동부에 송출되는 한인 라디오 방송국 AM 1600 K-Radio의 보도국 뉴스에 출연하여 공무출장의 주요 성과를 공유함

- 국회입법조사처가 준비하고 있는 입법영향분석의 내용 및 필요성, 의회조사국과 하원 법제실 등 미 의회 기관과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브루킹스 연구소와 헤리티지 재단 등 중요 싱크탱크와의 연구협력 방안 등을 설명함
- 미국 상원의 인사청문회 운영 방식이 우리나라 인사청문회 개선이 미치는 시사점, 의회외교 강화를 위해 워싱턴에 (가칭)의회외교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설명함
- 재외동포투표 및 복수국적 제도 개선을 위한 워싱턴 총영사관, 워싱턴 한인회장, 뉴욕한인회 면담 내용을 공유하고, 전세계 개발도상국의 의회 및 정치 발전을 위한 국회입법조사처와 UNDP의 협력방안 모색 내용을 설명함



8) 엘렌 박 뉴저지 주하원 의원 면담

□ 면담일시: 2024년 1월 26일 금요일 14:30-15:30

□ 참석자

| 국회입법조사처 | 엘렌 박 의원실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 정준화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 박단비 기획협력담당관실 대외협력 주무관 - 정상훈 주뉴욕총영사관 입법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엘렌 박(Ellen J. Park) 뉴저지 주하원 의원/법사위원장 - 장선직 보좌관 |

□ 주하원 정치활동 소개


- 주하원으로 당선된 뉴저지 37 선거구는 한인 밀집타운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어 전체 23만 명의 유권자 중에서 한국인이 25% 정도 차지함
- 뉴저지 공문서 한국어 번역 서비스 제공 법안 제정, 김치의 날 지정 결의안, 음력 설날 기념 결의안, 한국-뉴저지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체결 등 한국 관련 의정활동이 많음

□ 재외동포 참정권 및 복수국적에 대한 의견

- 한인의 미국 정치 참여가 확대될 경우 한인에 대한 주정부·연방정부의 지원이 확대될 수 있지만 재외동포 중 시민권자들은 미국 정치(투표) 참여율이 높지 않아 아쉬움
- 복수국적과 관련하여,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복수국적이 허용되어 한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병역, 세금 등의 부담이 발생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음
 - 복수국적을 허용할 때 어떠한 그룹에서 어떠한 편익과 부담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예측·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결정을 할 필요가 있음
- 재외동포 참정권과 복수국적 모두 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 제도의 개선만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재외 한인들에게 한국을 잘 알리는 프로그램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방학 중에 한국을 경험하는 프로그램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미국의 젊은 세대가 한국을 경험하게 하는 기회를 늘리면 앞으로 재외동포로 역할을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임



□ 주요 면담인사 인적사항

| | | |
|------|--|---|
| 성명 | 엘렌 박 (Ellen Park) |  |
| 직위 | 뉴저지 주하원 의원 / 법사위원장 (재선 의원, 민주당, 37선거구) | |
| 학력 | 뉴욕대학교 정치학 학사 호프스트라대학교 로스쿨 JD | |
| 주요경력 | 2016 ~ 2018 뉴저지 주 잉글우드 시의원 2022 ~ 뉴저지 주하원의원(2021년 당선, 2023년 당선) 2024 ~ 뉴저지 주하원 법사위원회 위원장 | |

● 국회입법조사처장 미국 방문 ●

Ⅲ. 참고자료



1. 미국 개관



가 약 황

- 명 칭 : 미합중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수 도 : 워싱턴(Washington, D.C.)
- 면 적 : 983만km²(한반도의 약 45배)
- 인 구 : 약 3억 3,329만명('22)
- 인구구성
 - 백인(61.6%), 흑인(12.4%), 아시아계(6.0%), 원주민(1.3%), 다인종(10.2%), 기타(8.4%)
 - * Hispanic : 전체 인구의 18.7%
- 종 교
 - 개신교(40%), 가톨릭(21%), 몰몬(2%), 유대교(2%), 이슬람(1%), 무교/기타(34%)('22)
- 정부형태 : 연방공화국(대통령 중심제)
- 의회구성 : 상하 양원제
 - 상원 : 100석(임기 6년)
 - 하원 : 435석(임기 2년)
- 주요정당 : 공화당(Republican Party), 민주당(Democratic Party)
- 정부 주요인사
 - 대통령 : 조 바이든(Joe Biden)
 - 부통령 : 카멀라 해리스(Kamala Harris)
 - 국무장관 :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 경제현황 *추정치
 - 국내총생산(GDP) : 25조 4,627억불('22)
 - 1인당 GDP: 79,399불('22)
 - 경제성장률(GDP기준) : 2.1%('22)
 - 교역규모('22)
 - 상품수출 : 2조 856억불
 - 상품수입 : 3조 2,773억불
 - 공적개발원조(ODA) 순지출 : 552.8억불('22)*

나 정치체제

□ 구성

1) 대통령

- 국가원수, 행정부 수반
- 헌법상 권한
 - 공직임명권, 의회 소집권, 거부권, 항목별 거부권(Line-item Veto), 조약체결권, 최고 사령관(Commander in Chief), 사면권
- 피선거격
 - 35세 이상 미국 출생의 미국 국적자로서 적어도 14년 동안 미국에 거주한 자

2) 부통령

- 선거 및 임기 : 대통령과 동일
- 대통령이 질병, 부재, 사망, 사임, 탄핵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을 승계하여 국정 수행

3) 행정부 주요 부처

- 국무부 (Department of State)
 - 모든 대외관계 직무 수행, 조약에 관한 협상, 금재외공관 지휘, 국제경제정책, 공공외교, 문화교류 시행
- 국방부 (Department of Defense)
 - 전쟁 저지와 미국의 안전보장 유지를 위해 군대 보유, 육·해·공군성 업무 종합, 조정, 각 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 행사
 - 3군 장관은 행정관리, 병참보급 및 통합사령부에 배속되지 않은 부대에 대한 지휘 담당
- 재무부 (Department of Treasury)
 - 국내외의 재정정책 수립 건의, 조세정책 수립 및 각종 세금징수, 화

폐 및 국채의 발행·관리, 국립은행 감독

- 상무부 (Department of Commerce)
 - 미국 경제자원에 대한 개발, 미국의 대외무역정책 수립, 상무 및 공업 분야 업무 총괄
-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 장래 발생 가능한 테러 공격으로부터 국가 및 미국인 보호가 1차적 임무
 - 위협요소 분석, 국경 및 수송 부문 보안, 화학·생물·방사능·핵 등에 대한 대응조치, 국가재난 등 비상상황 대처 및 대응조치, 연방·주·지방 정부 부서 및 민간부문과의 공조 추진

□ 연방 의회

1) 상 원

- 정원 : 100명 (각 주에서 2명씩 선출)
- 피선거권 : 30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로 9년 이상이 된 출마 주 거주자
- 임기 : 6년 (2년마다 1/3 교체)
- 상원의장 : Kamala D. Harris (민주, 부통령)
 - 임시의장 : Patty Murray (민주, 워싱턴)
- 주요기능 : 조약체결 비준권, 고위직 임명 동의권, 탄핵 의결권

2) 하 원

- 정원 : 435명
- 피선거권 : 2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로 7년 이상이 된 출마 주 거주자
- 임기 : 2년
- 하원의장 : James Michael Johnson (공화, 루이지애나)
- 주요기능 : 예산권 심의, 탄핵 소추권

3) 상·하원 공동권한

- 법률안 제출권
- 상·하원 공동 권한으로서, 양원이 일치해야만 의결 효력 발생
- 기본적으로 법안은 양원 중 어느 원에 제출해도 무방하나, 제출/세입에 관한 법안은 하원에 先제출

다 경제정세

□ 성장률·통화정책

- 미국 경제는 ‘23.2분기까지 4분기 연속 2%대 성장세를 유지한데 이어 견조한 소비와 투자에 힘입어 3분기 5.2%의 고성장을 기록함
- ’24년에는 누적 긴축효과, 재정의 성장기여 감소 등으로 2~3분기 0%대 성장이 예상되나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 Fed)의 통화정책 완화 등으로 경기 연착륙이 예상됨
- 연방준비제도의 5.25% 금리인상과 양정긴축 등 공격적 통화 긴축과 국내외 공급망 회복 등으로 개인소비지출(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PCE) 물가상승률이 ‘22.6월 7.1% → ’23.10월 3.0%로 하락한 가운데, 미국 경제는 3분기 5.2%의 견조한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실업률(3.7%)도 50년래 최저 수준
- 미국 경제는 ‘23.1Q 2.2% → 2Q 2.1% → 3Q 5.2% 성장했는데, 민간 소비·투자(국내 민간 최종구매액, PDFS) 증가세가 3분기 3.3%를 기록하는 등 소비와 투자가 견조한 성장세의 동인으로 작용
- 미국 경제는 누적긴축 효과의 소비·투자 제약, 재정의 경기부양 효과 감소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나 상반기 초과저축 잔존 효과 및 ’24년 중반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완화 개시 등으로 연착륙 가능성
- 연방준비제도가 ‘24년 3회 금리인하를 시사한 가운데 금융시장은 선제적 금리인하(Insurance Cut) 등 공격적 통화정책 완화를 기대하고 있으나 지표 의존적(data dependent) 정책기조 유지 감안 시 3월 금리인하 기대는 과도→내년 중반(6,7월) 피벗 가능성

□ 미국 인플레이션

- 공급난 해소 및 고강도 통화긴축 영향 등으로 근원 상품, 주택서비스, 비주택서비스 물가가 동반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둔화
- 노동시장 불균형 완화 등으로 물가의 하향 기조가 우세하여 '24년말까지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2% 근접,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2% 중반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

□ 미국 노동시장·고용

- '23년은 공급 증가 및 수요 감소를 통해 노동시장 수급의 불균형이 개선되며 고용 악화 및 경기둔화가 부재한 디스인플레이션(painless, immaculate disinflation) 현상에 기여
- '24년 노동시장은 통화긴축 여파 등으로 완만한 둔화세에 진입할 가능성 존재
- 노동공급이 확대되었고 피고용인이 아닌 신규 구인 위주의 노동수요 감소로 실업률의 급격한 상승 없이 노동시장 불균형이 개선되면서 연착륙 전망을 뒷받침
- '24년에는 금리인상의 여파가 시차를 두고 발현되면서 비농업고용의 일시적인 마이너스 전환, 실업률 약 4% 중반의 정점 도달 등 노동시장의 둔화 예상

□ 미국 재정상황

- FY(Fiscal Year)23년 재정적자 및 연방정부 부채 확대 등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가운데 FY24년에는 재정지출 폭이 줄어들며 정부지출의 경기부양 효과가 축소될 전망
- 높은 재정적자 누적, 세출법안 통과 지연 등으로 정부지출 확대가 제한되면서 '24년 재정수지는 전년대비 소폭 개선되거나 유지될 것으로 예상

2. 한·미 관계



가 정무관계

□ 수교 및 공관현황

1) 수교일자

- 1982. 5. 22. 조·미 우호통상항해조약 체결
- 1949. 1. 1. 미국, 대한민국 정부 공식 승인

2) 공관현황

- 상주 대사관('49.3.25. 설치)
- 9개 총영사관 및 4개 출장소

3) 수출·입 현황 및 주요 품목(' 22)

- 수 출 : 1,098 억불
 - 자동차, 자동차 부품, 산업용 기계 등
- 수 입 : 818 억불
 - 원유, 반도체 제조용 장비, LPG 등

□ 재외국민 현황

1) 미국지역 재외동포 현황('21) : 약 263만명

2) 한인 이주 역사

- 한국에 있어서 최초의 미국 이민은 1902년 하와이 설탕재배자협회 비숍 회장이 내한하여 대한제국 정부와 이민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시작
- 미국 이민이 시작된 이래 해방 때까지 하와이 사탕수수노동자와 더불어 독립운동가와 유학생의 이주가 이어졌고, 해방 이후에는 미군 병사와의 혼인, 전쟁고아, 입양, 유학 등을 사유로 이주 증가

- 이후 1965년 존슨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이민개정법으로 의사, 간호사 등 취업 이민이 증가했으나, 1970년대 오일쇼크로 인한 미국 내 불경기로 전문직 이민이 억제된 대신 노동직, 기능직, 서비스직, 농업 이민 증가
- 1970년 초부터 본 궤도에 오른 미국 이민은 1980년대 중반 가장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1985년과 1987년 사이에 연 3만5천여명이 이민
- 1990년대 중반부터는 이민이 점진적으로 감소, 현재 재미동포는 260여만명으로 추산

3) 오늘날의 미국 동포사회

- 오늘날 260여만명이 넘는 재미동포가 LA, 뉴욕, 워싱턴 DC,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대도시 주변에 대부분 동포사회를 형성하고 있으며, 미국 내 아시아계 중에서는 중국, 인도, 필리핀, 베트남에 이어 5번째를 차지
- 재미동포는 어린 나이 이민을 간 1.5세대와 현지에서 출생해 성장한 2세대의 비중이 커져가는 세대교체를 겪고 있으며, 그에 따라 주요 취업 업종도 이전의 자영업·서비스업에서 높은 교육 수준과 영어구사력을 바탕으로 한 전문직·사무직으로 옮겨가 주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는 추세

□ 인적교류 현황 (' 22)

- 방미 : 약 91.9만명
- 방한 : 약 54.4만명

□ 주요인사 교류현황

1) 정상급

- 2023. 4월 윤석열 대통령 방미
- 2023. 8월 윤석열 대통령 방미
- 2023. 9월 윤석열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

- 2023. 11월 윤석열 대통령 APEC 정상회의(샌프란시스코) 참석

2) 기 타

- 2023. 2월 박진 외교부장관 방미(뉴욕, 워싱턴)
- 2023. 5월 G7 정상회의 계기 외교장관회담(히로시마)
- 2023. 9월 유엔총회 계기 한미일 외교장관 약식 회의(뉴욕)
- 2023. 11월 블링컨 국무장관 방한
- 2023. 11월 APEC 각료회의 계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샌프란시스코)

□ 북한과의 관계

- 2018. 6. 12. 1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싱가포르)
- 2019. 2. 27-28.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하노이)
- 2019. 6. 30.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

나 경제관계

□ 한·미 교역 동향

- 한국과 미국 간 교역 규모는 2021년 1,691억불로 한미 FTA 체결 이전인 2011년 1,008억불에서 약 70% 크게 증가
 - 미국은 한국의 2대 교역국이며, 한국은 미국의 6대 교역국
- 2021년 우리의 對미국 상품 수출은 959억 달러, 수입은 732억 달러로, 우리는 227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 기록
 - 對미국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17.5%), 일반기계(10.5%), 반도체(9.2%), 컴퓨터(5.6%), 제트유·등유(2.9%) 등
 - 對미국 주요 수입 품목은 원유(11.5%), 반도체제조장비(7.1%), 천연가스(6.6%), LPG(6.5%), 반도체(4.4%), 승용차(3.7%), 육류(3.7%) 등
 - ※ 특히, 한국 내 수입 육류 1위가 미국이며, 미국 내 소고기 수출 1위가 한국

□ 한·미 투자 동향

- 1968~2021년 한국의 對미국 투자(신고 기준) 누적금액은 3,709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해외투자에서 34.3%(한국의 최대 해외투자 대상국) 차지
 - 특히, 2021년 5월 한미 정상회담 계기 우리 기업들은 ▲반도체(180억불) ▲배터리(140억불) ▲전기차(74억불) 대미 투자 발표
- 한편, 1962~2021년 미국의 對한국 투자(신고 기준) 누적금액은 503억 달러로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7.3%(EU 다음의 제2위 투자국)

□ 미국의 시장성 평가

- 미국 내수시장 규모는 14조불로 세계 1위
- 미국 소비지출 완만한 증가세이나 향후 둔화 조짐
 - 분기별 소비자지출은 팬데믹 전 수준 회복하였으나 향후 경기상황에 대한 우려가 확대 되며 소비자신뢰지수는 증가추세 둔화
 - 소비자신뢰지수(기준치 100) : 20년 101.0 → 21년 112.7 → 22년 108.1 → 23.2월 102.9

□ 주요 수출업종 경쟁력

- (자동차 및 부품) 최근 5년 미국 시장내 점유율 증가 추세이나, IRA 시행 등에 따른 제약요인 상존
 - ‘22년 기준 현대차그룹(현대/기아) 미국 자동차 시장 점유율: 10.6% (5위)
 - 최근 미국내 현대/기아 전기차 판매량 추이
 - * (아이오닉5) 22.6월 2,853대 → 22.11월 1,191대 → 23.2월 2,074
 - * (EV6) 22.6월 2,567대 → 22.11월 641대 → 23.2월 1,294
- (반도체) 대미 수출의 8% 차지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관련 기업들은 상무부의 반도체지원법 가이드라인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보조금을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

3. 미국 의회 및 한·미 의회 교류 현황



가 미국 의회 개요

□ 일반사항

- 미국은 세계적으로 입법부의 권한이 강력한 국가 중 하나로 평가
- 연방의회는 양원제로서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
 - 건국 과정에서 주의 대표성 관련 큰 주와 작은 주 간 대타협의 산물
 - 상원: 지역 대표(주당 2석) / 하원: 국민 대표(인구비례)
- 대통령과 각료는 의원직 겸직 불가
- 의안이나 법안은 의원만이 제출 가능
 - 양원 모두 법안 발의권 보유 / 단, 세입 법안은 하원에 우선권 부여
- 상·하원 모두 다수당이 모든 위원장직을 장악, 주도권 행사
- 1789년 제1대 의회가 구성된 이래 2023.1월 118대 의회(118th Congress) 구성

□ 상원

- 의석수 및 임기: 100석, 6년 임기(매 짝수해에 1/3을 대상으로 선거 실시)
 - 구성: 공화당 50석 / 민주당 48석 / 무소속(민주 성향) 2석(21.3.12.)
- 주요 권한: 조약체결 비준동의권, 고위직 임명 동의권, 탄핵 의결권 등
- 지도부
 - 상원의장(President): 헌법상 부통령이 당연직 상원의장이거나, 투표권 부재 / 단, 투표 결과 가부동수시 캐스팅보트(결정권) 행사
 - 임시의장(President pro tempore): 회의 주재 등 실질적 상원 내 의장 역할
 - 다수당/소수당 대표(Majority/Minority Leader): 상원 내 실질적 지도자

- 다수당/소수당 원내총무(Whip): 대표 보좌
- 상임위원회: 세출, 재무, 외교, 군사, 예산 등 16개 위원회
- 특징: 의원 개개인의 권한이 강하며, 사실상 만장일치제로 운영

□ 하원

- 의석수 및 임기: 435석, 2년 임기(매 짝수해에 전원을 대상으로 선거 실시)
 - 구성: 민주당 212석 / 공화당 222석 / 공석 1석(21.1.13.)
- 주요 권한: 예산안 심의권, 탄핵 소추권 등
- 지도부
 - 하원의장(Speaker): 매 회기 초 다수당 원내총회에서 지명, 본회의 선출 / 하원 업무를 총괄·감독하고 공식적으로 하원을 대표
 - 상임위원회: 세입, 세출, 재무, 외교, 군사, 예산 등 20개 위원회
 - 특징: 지도부의 규율과 위계질서가 강하며 규정에 충실하게 운영

미 의회 원내대표(Leader)와 원내 총무(Whip)

○ 미국 양당에는 당대표가 따로 없는 대신 당대표와 원내대표 역할을 같이 하는 Majority/Minority Leader가 있고 바로 아래 직책으로 Whip이 있다. 한국에서는 Leader를 원내대표, Whip을 원내총무로 번역해서 사용한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초반까지 미국 정당 제도에서 따온 원내총무라는 직책이 존재했다. 2003년과 2004년 당시 여당과 야당이 당 체제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원내총무를 원내대표로 격상하면서 원내총무 직책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채찍(whip)’이란 단어가 주는 어감에서 알 수 있듯이 원내 총무의 주요 책무는 소속 의원들의 ‘표 단속’이다. 표결이 예정된 회의에 의원들이 참석하여 당론에 따라 투표하도록 독려하는 책임을 맡는다.

□ 입법 과정

가. 법안 제출

1) 제안 절차

- 법안 제안자가 법안 또는 결의안을 의회 서기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Hopper라고 부르는 상자에 투입함으로써 제출
- 제출된 법안은 제출자 이름과 함께 접수 순서대로 접수번호가 부여되며, 정부인쇄국(GPO, Government Publishing Office)에서 인쇄
- 의장은 법안의 번호와 건명만을 낭독하고 토론 없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 법안은 상·하원 어느 곳에나, 양원에 동시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제출 가능

2) 제안 요건

- 하원에서는 25명의 한도 내에서 공동제안 가능
- 상원에서는 인원제한 없이 공동제안 가능

3) 법안의 제출형식

| 종 류 | 표 시 | | 내 용 |
|-----------------------------------|------------|------------|---|
| | 상원 | 하원 | |
| 법안 (Bill) | S | HR | 상·하원 통과 후 대통령 서명에 의해 법률로 확정되며, 일반적인 목적의 법 제정 시 사용 |
| 합동 결의안 (Joint Resolution) | S.J.Res | H.J.Res | 법안과 동일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한정된 목적 또는 특수목적의 법 제정 시 사용 |
| 공동 결의안 (Concurrent Resolution) | S.Con. Res | H.Con. Res | 양원 통과가 필요하나 대통령의 승인은 불요. 의회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의회 내부문제(내부예산)를 제외하고는 법률로 확정되지도 않고 법률에 대한 영향도 별무 |
| 결의안 (Resolution) | S.Res | H.Res | 상·하원 중 하나만 통과되며, 보통 각 원의 내부문제 또는 각 원의 의사(sense of congress)를 표시할 때 사용 |

나. 위원회 심의

| 순서 | 과 정 | 내 용 |
|----|-----------------------------|---|
| 1 | 정부관계기관 의견 청취 | 일반적으로 상임위원회는 법안 접수 후 정부관계기관의 의견 청취 |
| 2 | 청문회 |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의한 청문회 개최 및 심의 |
| 3 | 소위원회 보고 | 소위원회는 법안심의후 상임위원회에 조치를 건의하거나 또는 수정을 제안 |
| 4 | 본회의 건의여부 투표 | 상임위원회는 소위원회 건의를 본회의에 상정할 지의 여부를 투표로써 결정 |
| 5 | 보고서 작성 | 보고가 결정되면 해당 소위원회 위원장 또는 최초의 법안제출자가 보고서를 작성. 이에 소수견해가 있으면 이를 보고서에 수록. 보고서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법안 소개, 위원회 활동 요지, 항목별 분석, 토의과정, 법안에 의한 현행 법안의 변화, 개인·소수 또는 추가 견해의 순으로 작성 |
| 6 | 규칙위원회 심의 (하원의 경우) | 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의 대부분은 규칙위원회에 회부, 분류되어 본 회의에 송부 |
| 7 | 간사 (Floor Manager) 선정 | 본회의에서 상정된 법안에 대한 반대를 봉쇄하고, 이를 통과시키기 위하여 각 정당은 담당법안 심의 간사격인 간사를 선정. 간사는 반드시 서열에 의해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보다는 법안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거나 또는 본회의 심의에 있어 숙달된 의원을 선정 하는 것이 상례 |

다. 본회의 심의

1) 의사일정: 위원회가 본회의에 보고한 법안은 의사일정에 상정

| |
|--|
| ◇ 하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원위원회 의사일정 (Union Calendar) : 이 의사일정에는 모든 세입 및 세출법안과 직·간접으로 금전 및 재산에 관계되는 성격의 모든 법안이 상정 되며, 여기에 상 정된 안건은 그 순서에 구분 없이 즉각 처리 · 본회의 의사일정 (House Calendar) : 세입 및 세출 법안을 제외한 모든 공법안이 여 기에 상정 · 인정 의사일정 (Corrections Calendar) : 주요 현행법의 적용이나 해석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비교적 논란의 소지가 적은 안건이 상정 · 사법안 의사일정 (Private Calendar) : 개인이나 단체를 구제하기 위한 안 등이 상정 |
| ◇ 상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원에는 조약과 임명동의를 위한 “Executive Calendar” 하나만 존재 |

2) 토론

◇ 하원

- 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의 우선처리를 위한 특별규칙 요구결의안을 규칙위원회에 제출
- 규칙위원회는 해당안건의 처리방식을 결정, 본회의에 보고. 일반토론이 끝난 후 안건이 조목조목 낭독되며, 이 때 수정동의가 나오면 수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 실시

◇ 상원

- 제출된 안건이 시급하거나 중요할 경우에는 만장 일치 또는 다수투표에 의해 조속 처리. 상원에서의 토의는 무제한인바, 때로는 소수와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필리버스터, Filibuster)을 통해 법안통과를 저지(재적 3/5 찬성에 의해 “토론종결(Clature)” 가능)

3) 표결

- 제3회독 및 최종표결: 수정안 표결 후 제3회독에서는 법안 낭독 없이 제목만 낭독하고, 제3회독 후에는 토론 없이 법안 전체에 대한 표결 실시
- 상원의 표결방법 : 구두투표 (Voice Vote), 기립투표 (Standing Vote, Division Vote), 호명기록 투표(Roll Call Vote)
- 표결정족수: 헌법개정,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의 재의결, 조약의 비준 동의, 탄핵재판 판결 등은 2/3 이상 찬성, 그 이외의 모든 법안은 단순 과반수 찬성에 의해 결정

◇ 법안의 표결 방법

- 1) 구두투표 (Voice Vote)
- 2) 기립투표 (Standing Vote, Division Vote)
- 3) 투표검사인 (Teller) 사용방법
 - 정족수 1/5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실시하며, 의원들이 의장석 앞을 지나면서 투표하는 것으로 총 투표 결과만 발표
- 4) 투표결과를 의사록에 기록하는 방법 (Recorded Vote)
 - 정족수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실시하며,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각 의원의 투표시 그 결과가 전면의 전광판에 기록되는 동시에 의사록에 자동적으로 기재
- 5) 호명기록 투표 (Roll Call Vote)
 - Yea와 Nay에 의한 구두투표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본회의에서 사용

라. 양원협의회(Conference Committee)

1) 필요성

- 양원 중 어느 한 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타원에 송부. 만약 타원이 극히 부분적인 수정을 하고 동 법안을 제출한 원이 이에 동의할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송부. 그러나 양원이 상호간 차이점에 대하여 완전합의를 보지 못할 때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양원협의회에서 법안을 심의

2) 양원협의회의 구성

- 양원협의회는 법안을 취급하는 위원회의 중진의원들로 구성. 보통 각 원에서 지명된 3~9명의 의원들로 구성. 단, 양원협의회의 임무는 토론을 통한 이견 조정에 있으므로 양원 간 대표의원수가 반드시 동수가 아니어도 무방

3) 법안 심의

- 심의과정에 있어서 양원이 일정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새로운 입법조항 삽입 불가. 협의회에서 양원이 의견의 일치로 보기까지는 통상 수일 내지 수주일이 소요

4) 보고서 채택

- 협의회참석자들이 합의에 도달하게 되면 건의가 포함된 보고서 준비. 이때 양원 참석자들은 보고서에 대한 설명문을 준비해야 하며, 이 보고서와 설명문은 양원에서 문서로 인쇄된 후, 양원에 제출 및 승인 필요

마. 대통령 서명 및 거부권 행사

1) 대통령 서명

- 양원을 통과한 법안은 각 원의 서기에 의해 등록되어 서기장의 확인을 받은 후, 하원의장과 상원의장의 서명을 받아 대통령에게 송부. 대통령은 송부된 법안에 10일 이내에 서명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서명하지 않으면 동 법안은 법률로서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발생

2) 대통령의 거부권(veto)

- 대통령은 선전포고를 위시한 모든 법안에 대하여 거부권 행사 가능. 다만 법안의 일부는 찬성하고 일부는 거부하는 부분 거부권은 행사 불가

-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시 법안에 이의서를 첨부, 발의한 의원에게 다시 돌려줌. 환부를 받은 원은 대통령의 이의를 의사록에 수록 후 본회의 표결에 회부. 표결에서 2/3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이의서와 함께 타원에 회부
- 타원에서 재심결과 역시 2/3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효화되고 대통령의 서명 없이도 이 법안은 법률로서 확정. 이때 양원의 표결은 호명표결 방식으로 행해지며, 찬·반 투표자의 성명이 의사록에 기재

◇ 거부권 종류

- **Pocket veto** : 대통령이 고의적으로 10일 이내에(일요일, 휴일 제외) 서명을 하지 않고 시일을 지연하고 있는 도중 의회가 휴회 또는 폐회하게 되면, 그 법안은 대통령의 정식 거부권이 없이도 자동적으로 폐기
- **폐회로 인한 veto** : 상원이나 하원 중 하나만을 통과한 법안이 타원의 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이 의회 회기가 종료되면 해당 법안은 완전히 폐기

※ 역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현황

(괄호안은 의회에서 2/3이상 찬성으로 재가결된 횟수)

- | | |
|----------------|-----------------|
| · 트루먼: 250(12) | · 아이젠하워: 181(2) |
| · 케네디: 21(0) | · 존슨: 30(0) |
| · 닉슨: 43(7) | · 포드: 66(12) |
| · 카터: 31(2) | · 레이건: 78(9) |
| · 부시: 46(1) | · 클린턴: 37(2) |
| · 부시: 12(4) | · 오바마: 2(0) |

3) 법안의 법률확정

-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 또는 의회에 대한 대통령의 veto에 대한 재표결이 있는 후 법률로서 확정. 법안은 공익법안 또는 사익법안으로서 매 회기(2년)내의 일련번호를 부여(예: Public Law 36, 91th Congress 또는 Private Law 21, 90th Congress)

나 한·미 의회 교류 현황

□ 방미 현황

- '21. 9.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방미
- '21. 9.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방미
- '21. 9. 김한정 민주당 국제위원장 방미
- '22. 3. 이학영 의원 등 방미(한미 FTA 발효 10주년 계기)
- '22. 6. 국회평화외교포럼 대표단 방미
- '22. 8. 정진석 국회부의장 대표단 방미
- '22. 9. 아시아인권의원연맹 대표단 방미
- '22.10. 국회평화외교포럼 대표단 방미
- '22.11. 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 대표단 방미
- '23. 4. 윤석열 대통령 방미
- '23. 8. 윤석열 대통령 방미

□ 방한 현황

- '21. 6. 상원 군사위 대표단 방한(Chris Coons 의원 등)
- '21. 7.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의원단 방한
- '21.11. 하원의원 대표단 방한(Mark Takano 의원 등)
- '21.11. John Ossoff 상원의원 방한
- '22. 7.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 방한
- '22. 8. Nancy Pelosi 하원의장 방한
- '22. 9. 하원의원 대표단 방한(Stephanie Murphy, Joe Wilson 의원 등)
- '22.10. Dan Sullivan 상원의원 방한
- '23. 4. Michael McCaul 하원외교위원장 등 하원대표단 방한
- '23.11. Antony Blinken 국무장관 방한

□ 한미의원연맹 설립 논의

- '22. 8. 낸시 펠로시-김진표 의장님 공동 기자회견

※ “현재 미 의회에는 지한파 의원들이 대거 입성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코리아코커스, 코리아스터디그룹, 의회외교포럼 등 다양한 협력의 틀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음. 금번 협의를 계기로 양국 의회 간 협력도 더욱 강화될 필요”

- '23. 2.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 촉구 특별 결의안」
(2.24. 본회의 통과)

7. 대한민국 국회는 한미 양국 의회가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상호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현안의 호혜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양국 의원연맹을 조속히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 '23. 4.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 공관 만찬 및 주요 인사 방한 시 영킴 의원 등 주요 인사와의 면담에서 미한의원연맹 관련 긍정적 지지의사 확인
- '23. 4. ‘한미의원연맹 창설, 왜 필요한가’ 를 주제로 한 라운드테이블에서 수미 테리 CSIS 국장 및 안호영 대사 등 대미 핵심 인사가 참석하여 한미 의회교류 강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
- '23. 12. 2024년도 예산 한미의원연맹 및 워싱턴 의회교류센터 반영